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2023

한국콜마(주)

목차

I. 들어가며

| | |
|------------------|----|
| 1. 한국콜마(주) CP | 12 |
|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16 |
| 3. 공정거래위원회 | 18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 |
|------------------------------------|-----|
| 1. 공정거래법 | 20 |
| 1.4. 기업결합 | 21 |
| 1.5. 경제력집중억제 | 33 |
| 1.6.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51 |
| 1.7. 부당공동행위 | 69 |
| 1.8. 불공정거래행위 | 82 |
| 2. 하도급법 | 102 |

III. 부록

| | |
|--------------------|-----|
| ① 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 | 154 |
| ② 준법통제기준 | 160 |
| ③ 자율준수프로그램(CP)운영규정 | 168 |
| ④ 내부거래 관리규정 | 177 |
|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 182 |
| ⑥ 부패방지정책 | 219 |
| ⑦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 222 |
| ⑧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 223 |
| ⑨ 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 | 228 |
| ⑩ 광고 업무 가이드라인 | 234 |
| | 236 |

차례

제·개정 이력관리

목차 및 차례

최고경영자 인사말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I.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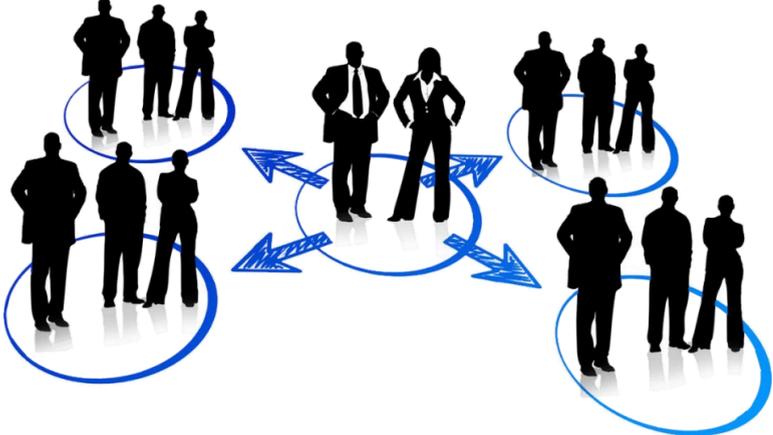
| | | |
|-----|----------------------|----|
| 1. | 한국콜마(주) CP | 12 |
| 1.1 | 조직도 | 12 |
| 1.2 | 운영성과 | 13 |
| 2.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15 |
| 2.1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의 | 15 |
| 2.2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성 | 15 |
| 2.3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요건 | 16 |
| 3. | 공정거래위원회 | 17 |
| 3.1 | 정의 | 17 |
| 3.2 | 기능 | 17 |
| 3.3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 18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 | |
|--------|----------------------|----|
| 1. | 공정거래법 | 20 |
| 1.1 | 정의 | 20 |
| 1.2 | 제정 목적 | 20 |
| 1.3 | 주요내용 | 20 |
| 1.4 | 기업결합 | 21 |
| 1.4.1 | 정의 | 21 |
| 1.4.2 | 심사 목적 | 21 |
| 1.4.3 | 유형 | 21 |
| 1.4.4 | 신고 | 22 |
| 1.4.5 | 심사 | 23 |
| 1.4.6 | 법 위반시 제재 | 24 |
| 1.4.7 | 기업결합신고 처리절차 | 24 |
| 1.4.8 | 관련 사례 | 25 |
| 1.4.9 | 관련규정 | 27 |
| 1.4.10 | Q&A | 29 |
| 1.4.11 | 업무상 유의사항(Dos/Don'ts) | 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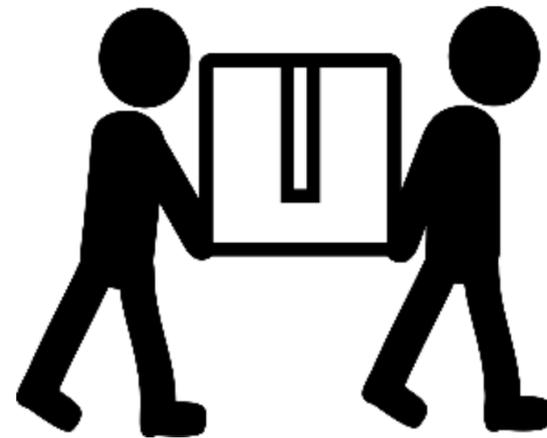


차례 

| | | | |
|--------|----------------------------|-------------------------------------------------------------------------------------|----|
| 1.5 | 경제력집중억제 |  | 33 |
| 1.5.1 | 개요 | | 33 |
| 1.5.2 | 상호출자금지제도 | | 33 |
| 1.5.3 | 채무보증제한제도 | | 34 |
| 1.5.4 | 금융 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 | 35 |
| 1.5.5 | 지주회사제도 | | 36 |
| 1.5.6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 | 36 |
| 1.5.7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 | 37 |
| 1.5.8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 | 38 |
| 1.5.9 | 신규순환출자 금지 제도 | | 39 |
| 1.5.10 | 관련 사례 | | 40 |
| 1.5.11 | 관련규정 | | 41 |
| 1.5.12 | Q&A | | 49 |
| 1.5.13 | 업무상 유의사항(Dos/Don'ts) | 50 | |

차례 

| | | |
|--------|-------------------------------|----|
| 1.6 |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51 |
| 1.6.1 | 정의(부당지원행위) | 51 |
| 1.6.2 | 규제 목적 | 51 |
| 1.6.3 | 유형 | 51 |
| 1.6.4 | 정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53 |
| 1.6.5 | 규제 목적 | 53 |
| 1.6.6 | 적용 요건 | 53 |
| 1.6.7 | 위반 유형 | 54 |
| 1.6.8 | 적용제외 | 56 |
| 1.6.9 |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57 |
| 1.6.10 | 법 위반시 제재 | 58 |
| 1.6.11 | 관련 사례 | 59 |
| 1.6.12 | 관련규정 | 61 |
| 1.6.13 | Q&A | 63 |
| 1.6.14 | 업무상 유의사항(Dos/Don'ts) | 67 |



차례 

| | | |
|--------|----------------------|----|
| 1.7 | 부당공동행위 | 69 |
| 1.7.1 | 정의 | 69 |
| 1.7.2 | 규제 목적 | 69 |
| 1.7.3 | 공동 행위의 성립 | 69 |
| 1.7.4 | 유형 | 70 |
| 1.7.5 | 법 위반시 제재 | 71 |
| 1.7.6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72 |
| 1.7.7 | 관련 사례 | 75 |
| 1.7.8 | 관련규정 | 76 |
| 1.7.9 | Q&A | 77 |
| 1.7.10 | 업무상 유의사항(Dos/Don'ts) | 80 |
| 1.8 | 불공정거래행위 | 82 |
| 1.8.1 | 정의 | 82 |
| 1.8.2 | 규제 목적 | 82 |
| 1.8.3 | 유형 | 82 |
| 1.8.4 | 법 위반시 제재 | 84 |
| 1.8.5 | 관련 사례 | 86 |
| 1.8.6 | 관련규정 | 89 |
| 1.8.7 | Q&A | 90 |
| 1.8.8 | 업무상 유의사항(Dos/Don'ts) | 94 |



차례

| | | |
|-------|----------------------|-----|
| 2. | 하도급법 | 102 |
| 2.1 | 정의 | 102 |
| 2.2 | 제정 목적 | 102 |
| 2.3 | 개요 | 102 |
| 2.3.1 | 용어설명 | 102 |
| 2.3.2 | 주요내용 | 103 |
| 2.3.3 | 주요 원사업자 의무사항 | 104 |
| 2.3.4 | 주요 원사업자 금지사항 | 107 |
| 2.3.5 | 법 위반시 제재 | 111 |
| 2.3.6 | 관련 사례 | 113 |
| 2.3.7 | 관련규정 | 119 |
| 2.3.8 | Q&A | 134 |
| 2.3.9 | 업무상 유의사항(Dos/Don'ts) | 144 |



III. 부록

| | | |
|---|-------------------|-----|
| ① | 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 | 154 |
| ② | 준법통제기준 | 160 |
| ③ |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 168 |
| ④ | 내부거래 관리규정 | 177 |
| ⑤ |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 182 |
| ⑥ | 부패방지정책 | 219 |
| ⑦ |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 222 |
| ⑧ |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 223 |
| ⑨ | 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 | 231 |
| ⑩ | 광고 업무 가이드라인 | 234 |

최고경영자 인사말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법·윤리경영을 리딩하는 모범 기업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콜마 대표이사 최현규입니다.

1990년부터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업계에 처음으로 ODM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고, 세계 최초로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융합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혁신을 거듭하며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기술력과 품질을 리딩해 왔습니다.

매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온 우리에게 앞으로 걸어나갈 길은 다른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콜마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근본적인 혁신으로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올해 한국콜마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 R&D 통합관리 기능 및 영업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 안정화와 중장기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준법·윤리경영 실천을 그 기반으로 하여 기업 신뢰도 제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당사는 CP(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시작으로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행했고, 강화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표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UN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콜마는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조직문화로 내재화함으로써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한국콜마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수준을 바탕으로 트렌드 파악, 상품기획, 개발, 출하,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No.1 Platform Service Provider입니다.

우리는 이에 더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법·윤리경영을 리딩하는 모범 기업이 되어 Best Practice를 전파하며 임직원과 함께 고객, 파트너, 주주 그리고 사회로부터 꾸준하게 신뢰를 얻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콜마가 준법·윤리경영의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CP에 대한 임직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도(正道)를 지키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정신으로 우직하게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콜마(주) 대표이사

최현규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윤리경영의 튼튼한 기초, 컴플라이언스 문화

안녕하십니까, 한국콜마 자율준수관리자 상무이사 김영호입니다.

과거 기업의 의무는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었지만, 현대 기업의 주요한 의무로는 윤리경영 즉, 기업과 사회, 소비자 모두의 상생을 도모하는 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이란 이러한 윤리경영에 튼튼한 기초가 되어 주는 기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법과 윤리적인 의무가 있듯이, 기업도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회사가 스스로 교육, 감독을 수행하게 하는 내부준법시스템입니다. 임직원분들이 실무를 진행하며 접하게 되는 모든 법규에 대한 준수를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존재합니다.

한국콜마는 기업의 준법경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UN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하며, 관련 규정 제정 및 시행 등을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법·윤리경영의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업계 최초로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ISO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취득하였고, 리스크 통제관리에 대한 체계의 효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됨으로써 대내외적인 신뢰도도 높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콜마는 업계를 선도하는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콜마의 컴플라이언스 문화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곧 윤리경영의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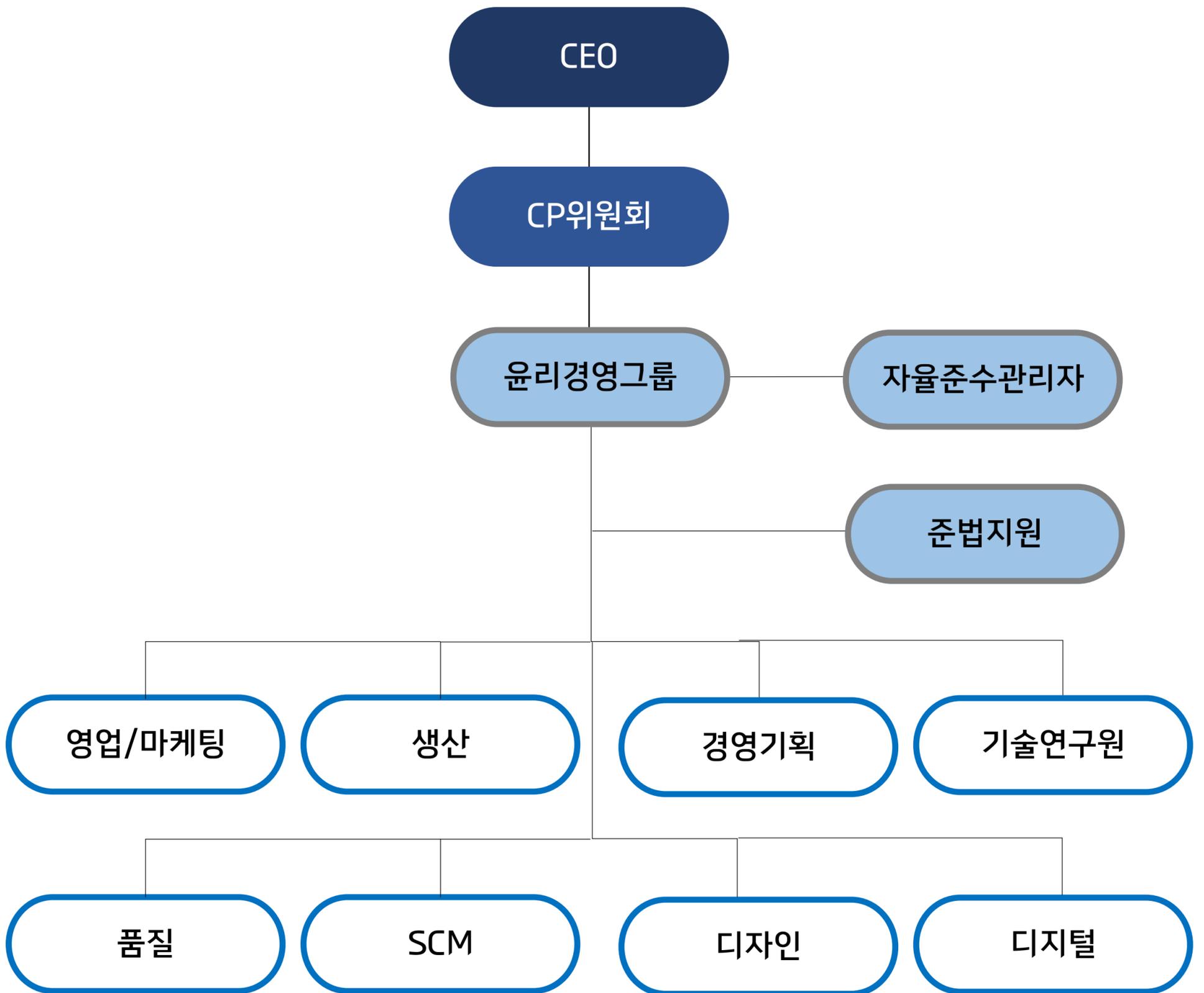


한국콜마(주) 윤리경영그룹장(자율준수관리자) 상무이사
김영호

I. 들어가며

1 한국콜마(주) CP

1.1 조직도



I. 들어가며

1.2 운영성과

2022

- 1
 -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및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당 제공 관련 Self-Check List 개정
- 2
 - UNGC 그룹 협의체 구성
 - ISO 37001, ISO 37301 통합인증심사원 자격취득
- 3
 - ISO 37001, ISO 37301 내부 심사원 양성 교육
 - UNGC 그룹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방침 승인
 -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선임
 - 준법지원인 및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 4
 - 신입 팀장 대상 CP교육
 -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서약서 서명
 - UNGC 그룹 협의체 3차/4차 회의 개최
 - 상반기 환경/산업안전 분야 준법 점검
- 5
 - ISO 37001, ISO 37301 리스크 평가 교육
 - UNGC 그룹 협의체 5차 회의-개최
- 6
 -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개정

I. 들어가며

1.2 운영성과

2022

- | | |
|----|----------------------------------------------------------------------------------------------------------------------------------------------------------------------------------|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교육 • 준법 윤리 경영 교육 • 신입사원 대상 준법 교육 • 준법점검 실무협의회 |
|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37001, ISO 37301 통합 내부심사 |
|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C CoP 대외 공개 • UNGC BIS Impact Forum 참가 • ISO 37001, ISO 37301 경영검토 |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기획 ‘반부패’ 영상 게재 • 하반기 하도급 분야 준법점검 • ISO 37001, ISO 37301 경영검토 • ISO 37001, ISO 37301 1단계 서류 심사 |
|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37001, ISO 37301 2단계 인터뷰 심사 • ISO 37001, ISO 37301 통합인증 획득 • 영업비밀 특강 |
|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컴플라이언스 교육(한국콜마(주) 전 임직원) • 경력 입사자 대상 준법 교육 • 자율준수관리자, 규범준수책임자, 준법지원인 변경 선임 |

I. 들어가며

1.2 운영성과

2023

- 1
 - 윤리경영그룹 신설
 - 1분기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윤리경영 메시지 전파 (윤리경영 레터, 윤리경영 서신)
- 2
 - 상반기 준법점검(인사·노무분야) 체크리스트 및 담당자 인터뷰 진행
- 4
 - 2023년 UNGC 실무그룹 1차 미팅 참여
 - 2분기 콜마그룹 준법점검 실무 협의체
 - CP위원회 신설 및 제1회 CP위원회 개최
 - ISO 37001, ISO 37301 내부심사원 양성교육
 - 콜마그룹 ESG 임원 워크숍
- 5
 - 제1회 자율준수의 날 행사 개최
 - ISO 37001, ISO 37301 매뉴얼 및 절차서 개정
 - ISO 37001, ISO 37301 리스크평가자 교육
 - 2분기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윤리경영 메시지 전파 (윤리경영 레터, 윤리경영 서신)
- 6
 - 제2회 CP위원회 개최
 - 상반기 준법점검(인사·노무분야) 결과보고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상반기 신입사원·경력사원 컴플라이언스 교육
 - 자율준수편람 3차 개정

I. 들어가며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2.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의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
-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을 의미

2.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성

-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전 예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용 감소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법원 소송 대응 관련 비용 및 시정조치 등에 따른 과징금 비용 등 최소화
- 공정거래 법규 위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인센티브(우수 이상)
 - 직권조사 면제, 공표 명령 감경, 위원장 표창 등
- 타 준법지원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 반부패경영시스템, 준법지원(감시)인, 정도 경영 등
- 임직원 공정거래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 해외 진출 기업 또는 해외 사업 추진 중인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I. 들어가며

2.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요건

하나.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둘.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셋.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넷.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다섯.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여섯. 내부감시체계 구축

일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여덟.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법규와 관련하여 업무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CP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 최고경영자는 소속 임직원, 일반 고객, 협력사 등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자율준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 ✓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는 CP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직접 논의가 가능한 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하여 공정거래 법규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고, 지속적인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 ✓ CP운영을 위한 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최고경영자 및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업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기업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해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여야 하며,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CP 관련 운영 실태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CP 개선에 반영하여, CP 운영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I. 들어가며

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1 정의

-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3.2 기능

-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 개혁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하여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 시정, 표준약관 보급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 허위, 과장 표시, 광고 시정,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도움
- 중소기업 경쟁 기반 확보
 -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 확보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시정
-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 문제점 시정

I. 들어가며

경쟁정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 공정거래법

1.1 정의

- 정식명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980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의 폐해를 적절히 규제·조정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추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1.2 제정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1.3 주요내용

- 전문 15장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
- 주요 규정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 부당한 공동 행위의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법 위반에 대해 행정절차에 의한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 민사적 구제방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4 기업결합



1.4.1 정의

-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
- 기업결합을 일반적으로 M&A라고도 하는데 이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이 일반 용어화 된 것임

1.4.2 심사 목적

-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음

1.4.3 유형

| 구분 | 내용 |
|----------|---------------------------------------------------------------------------------|
| 주식 취득·소유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상장회사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 임원 겸임 |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 합병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 영업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분할에 따른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제외)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4.4 신고

■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 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상대 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유형별 신고 시기

| 구분 | 신고 의무자 | 기업결합 유형 | 신고 시기 |
|-------|----------------|----------|-------------------------------------------------|
| 사전 신고 | 대규모 회사 | 주식취득 | 계약일 완료 후 이행 완료 전 |
| | | 합병 | |
| 사전 신고 | 대규모 회사 | 영업양수 |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 완료 전 |
| | | 회사 신설 참여 | |
| 사후 신고 | 대규모 회사 | 임원 겸임 | 겸임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
| | 대규모 회사 외의 자 | 주식취득 | 주권 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
| | | 합병 | 합병 등기일부터 30일 |
| | | 영업양수 |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
| 사후 신고 | 대규모 회사 외의 자 | 회사 신설 참여 | 주금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기업들의 신고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 제도로 운영
- 다만,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사후신고만으로 원상회복 등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

1.4.5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까지 연장 가능)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
- 경쟁제한성 심사기준

| 형태 | | 고려사항 |
|-------|----------------------------------------|-----------------------------------------------------------------------------------------------------------------------|
| 수평 결합 |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 |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 시장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수직 결합 | 원재료나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 | 시장의 봉쇄 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혼합 결합 | 수평·수직 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 잠재적 경쟁의 저해 효과,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의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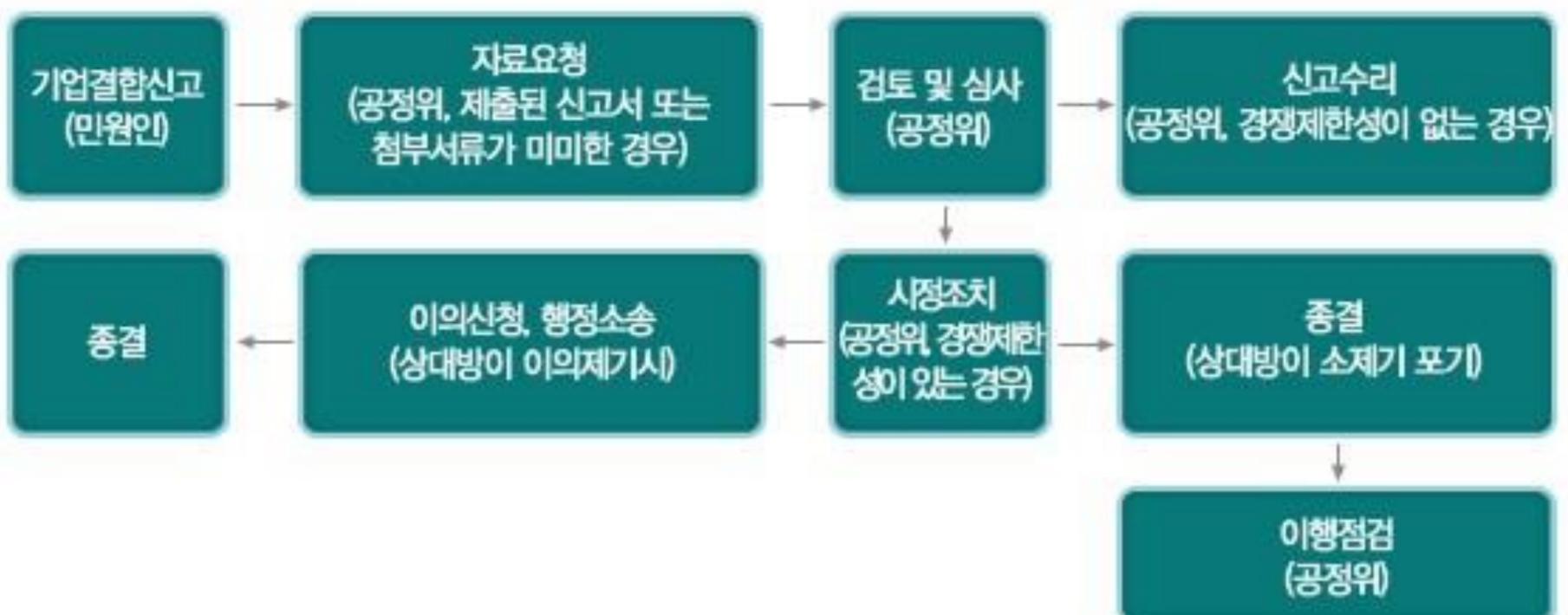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4.6 법 위반시 제재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 범위의 제한, 그 밖에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이행 강제금
 - 시정조치를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1일당 일정금액(최대 결합 금액의 0.03%) 범위 내에서 부과
- 과태료
 - 기업결합 신고(허위신고 포함) 위반시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임직원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1.4.7 기업결합신고 처리절차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4.8 관련사례

■ 한국콜마(주)의 (주)연우 주식취득 승인

사실관계

한국콜마(주)는 화장품 위탁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납품하면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구조이다. (주)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펌프형, 튜브형, 스포이드형, 향아리형, 쿠션형, 스틱형 등 다양한 화장품 용기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본 결합은 한국콜마(주)가 (주)연우의 주식 55%(약 2,864억 원)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 것으로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당사회사의 사업영역과 결합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장을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및 「화장품 용기 시장」으로 확정하였다. 화장품 위탁제조시장에서 한국콜마(주)는 약 15% 점유율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화장품 용기시장에서 (주)연우는 약 25% 점유율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화장품 용기 및 위탁제조 시장은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회사가 경쟁 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주)연우의 시장점유율(25% 내외)이 높지 않은 점, 화장품 용기 시장에 약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 고려 시, 화장품 위탁제조사들의 화장품 용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한국콜마(주)의 시장점유율(15% 내외)이 높지 않은 점, 위탁제조 시장에 약 50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 화장품 판매사에도 용기 공급이 가능한 점 등 고려 시, 화장품 용기 제조사들의 제품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따라서 심사결과, 시장집중도 및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결합을 승인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T사와 S사 간의 기업결합

사실관계

T사와 S사는 양질의 콘텐츠 수급 및 제작역량을 확보하여 OTT구독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병을 추진하였다. T사는 기업집단 C소속이고 S사는 기업집단 K소속인데, T사가 S사를 흡수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이므로 합병OTT는 기업집단 C소속이 되고, 기업집단 K와는 계열관계가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①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② 합병 OTT 계열사들이 콘텐츠를 합병 OTT에만 공급하여, 경쟁 OTT가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③ 반대로, 합병 OTT가 자신의 계열사로부터만 콘텐츠를 배타적으로 공급받아, 다른 콘텐츠 공급사들의 판매 경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구독료 인상과 관련하여, T사, S사의 “유료구독형 RMC OTT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는 약 18% 수준에 불과하여, 양 사가 합병하더라도 1위 N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배타적 공급은 기존에 경쟁 OTT에 공급하던 콘텐츠 공급을 중단함을 의미하는 바, 그 중단에 따른 배출 포기 규모가 합병 OTT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상당할 것이며 합병 OTT 계열사들이 배타적공급을 강행한다하더라도 경쟁 OTT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므로, 콘텐츠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낮다고 보았다.

반대로, 합병 OTT가 합병 OTT 계열사들의 콘텐츠만 수요함은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타 OTT 대비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행위의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OTT 사업자들인 T사가 S사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4.9 관련규정



■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 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 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4.10 Q&A

Q.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액이 320억원이며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이 3,500억원 정도로 저희보다 큰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하나요?

A.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은 신고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대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됩니다.

Q. 기업결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예외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효율성 증대 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합니다.

(2)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효율성 증대 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 부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업결합의 예외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A사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B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A사의 시장점유율은 34%, B사의 시장점유율은 18%로 결합 이후 1위 사업자가 되고 결합 이후 2위 사업자인 C사의 시장점유율이 36%라고 할 때 당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나요?

A. 기업결합 이후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2%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16%로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인 13%를 초과하기 때문에 당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추정됩니다.

Q. A사가 B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하여 C사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A사와 B사간 자산 양수 계약 후 A사와 C사간 자산 양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A사의 B사에 대한 잔금 지불과 C사의 A사에 대한 잔금 지불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기업결합신고는 누가 해야하나요?

A사 : 자산총액 3천 억 이상 2조 원 미만인 회사

B사 : 자산총액 3백 억 이상 3천 억 미만인 회사

C사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

A. 당해 사례에서 A사의 B사 영업 양수는 대금지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하나, A사는 신고기간 중에 해당 영업을 C사에 다시 양도하게 되어 신고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별도로 기업결합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C사의 A사로부터의 영업 양수는 이와 별개의 건으로 C사에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C사는 대규모 회사이므로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20% 이상 주식 취득으로 이미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는데도 신고 이후 상대 회사의 증자 또는 주식 매각 등으로 지분율이 20% 미만이 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A. 주식 소유 또는 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 후, 보유주식의 매각 등의 사유로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감소한다 하여도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새로운 회사 설립에 A사가 40%, B사가 30%, C사가 30%를 출자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B사와 C사는 계열회사 관계인데 이러한 사실이 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나요?

A. 신설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취득 또는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B사와 C사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60% 지분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되고, 두 회사 모두 신고의무대상회사가 됩니다. 다만,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를 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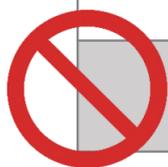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4.11 업무상 유의사항(Dos/Don'ts)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Dos)

- 의결권 없는 주식(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단, 이후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사후신고대상)
-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 최다출자자인 신고 회사 자체가 신고 요건인 신고대상 회사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만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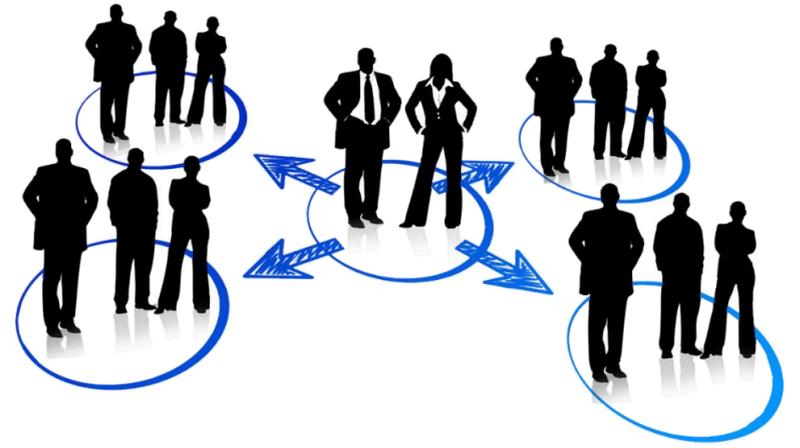
기업결합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인은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다른 회사와 신설 · 흡수 · 분할 합병을 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대규모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 임차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5 경제력집중억제

1.5.1 개요



■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형태로 추진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고자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지정

■ 도입 배경

-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해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1986년 12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법에 도입됨

1.5.2 상호출자금지제도

■ 개념

상호 출자란 회사 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함

■ 적용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 회사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주요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 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 필요성

- 상호 출자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가공의결권을 형성하여 지배권을 왜곡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악성적 출자 형태
- 상호출자금지제도는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지의 전제가 되는 준칙(rule)의 성격을 지님

■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위반 금액의 20%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5.3 채무보증제한제도

■ 개념

채무보증이란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차입을 할 때 신용 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해 주는 행위를 말함

■ 적용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 회사

■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금융, 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하는 행위를 금지
- 다만,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채무보증은 예외인정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필요성

- 금융기관의 중복, 과다 보증을 제한하고 계열회사 상호간 빚 보증을 통한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개별회사의 건전한 발전에도도
- 금융 자원이 기업집단의 힘이 아닌 효율성에 의해 배분되게 함으로써 자금 이용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채무보증을 통한 퇴출장벽을 완화하는 기능

■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위반 금액의 20%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5.4 금융 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 주요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및 보험업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상장 계열회사의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에 대한 결의 시에는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 행사 가능

■ 필요성

대규모기업집단(산업자본)이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그 금융회사는 고객 자금을 통해 다시 비금융계열(산업자본)로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경쟁 왜곡과 경제력집중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운영

■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5.5 지주회사제도

■ 개념

-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면서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말함

■ 주요내용

지주회사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투명한 출자 구조가 유지되도록 출자 단계 및 지분율 규제,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

■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위반 금액의 20%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5.6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 도입배경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고,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함

■ 주요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한 금액(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이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비상장법인은 7일 이내)에 의결 내용을 공시

■ 위반시 제재

법인 1억 원, 개인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조치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5.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 도입배경

- 상법상 특별한 공시 의무가 없는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불투명한 경영행태에 대한 효과적 감시를 위해 도입
- 비상장회사 등의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비상장회사 등의 소액주주 뿐 아니라, 동일 집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 존재

■ 적용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
- 다만,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 제외)는 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이라도 해당

■ 주요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자기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
- (소유지배구조)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현황, 임원의 변동 현황 등
- (재무구조) 비유동자산 및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처분, 증여·수증,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증자 또는 감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 (경영활동) 영업의 양도·양수·임대,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해산, 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 관리 절차의 개시·중단·종료 등

■ 위반시 제재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조치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5.8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 도입배경

- 사전적 규제로서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 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 도입
-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공시하여 스스로 투명성 책임성 제고

■ 적용대상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주요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 (일반현황) 회사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등
- (임원·이사회 현황) 임원명·직위·취임일·겸직사항 등 임원현황, 이사회, 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등
- (주식소유현황) 소유지분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 등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자금거래 및 자금대여 현황, 유가증권거래 현황, 상품·용역거래현황 및 내역,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채권·채무 잔액 현황, 채무보증·담보제공 현황,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거래 및 부동산 임대차거래 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등
- (순환출자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변동현황
- (지주회사현황)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 현황

■ 위반시 제재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조치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5.9 신규순환출자 금지 제도

■ 개념

순환 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사간 출자가 고리와 같이 상호 연결된 환상형 출자구조를 의미함

■ 적용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주요내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새로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 및 기존의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 출자)를 금지

■ 예외인정

기업의 사익구조개편(합병·분할, 영업 전부의 양수 등), 정당한 권리행사(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수령 등) 및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 자율협약 절차 개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의결 및 총수일가의 재산 출연 또는 기존 주주인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예외 사유에 따라 6개월~3년의 해소유예기간을 부여

■ 필요성

순환출자는 가공 자본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지배하는 여러 다단계 출자 형태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순환출자를 활용해 적은 지분으로 전체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괴리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소유구조는 총수(일가)의 부당한 보상 추구,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저해 및 개별기업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등의 폐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규제 필요

■ 위반시 제재

주식처분명령 등 시정조치,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행사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5.10 관련사례

■ D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 |
|----------------------------------------------------------------------------------------------------------------------------------------------------------------------------------------------------------------------------|
| 사실관계 |
|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D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B사의 주식을 '21.2.2.부터 '21.12.14.까지 약 10개월 간 소유하였다. |
|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
| 공정거래법은 <u>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u> 하고 있으며,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u>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u> 하였다. |

■ S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 |
|--------------------------------------------------------------------------------------------------------------------------------|
| 사실관계 |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사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P사의 주식을 2015.1.1.부터 2019.4.10.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하였다. |
|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
| 공정거래법은 <u>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u>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에 대해 향후 <u>금지명령 및 과징금 36백만 원을 부과</u> 하기로 결정하였다.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5.11 관련규정

■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간은 자본 총액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자회사가 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주식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 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 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다. 벤처 지주회사였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손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자회사주식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 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 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 지주회사였던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됨에 따라 손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거나 그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마.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 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바.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⑤ 제4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 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 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⑥ 제2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가목, 같은 항 제3호 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18조 제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열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3. 신기술 사업 금융 전문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투자조합
 - 나.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조합
 - 다.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출자한 투자조합(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는 행위(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
 -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나.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라.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6. 자신(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 조합을 포함한다)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및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회사로서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도록 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5.12 Q&A

Q.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 분할합병, 물적 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 등기일, 합병 등기일, 분할등기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 신고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Q.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항상 금지되나요?

A.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①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②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Q.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부여된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A.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부여된 유예기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①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②주식처분 금지 계약, ③사업의 현저한 손실 ④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 감소 또는 주식의 취득 처분 등이 곤란 경우)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2년 연장 가능합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5.13 업무상 유의사항(Dos/Don'ts)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Dos)

-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 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증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6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1.6.1 정의(부당지원행위)

-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함

1.6.2 규제목적

- 부당지원행위가 이루어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되어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회사 대 회사’라는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회사대 기업집단’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짐
-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이 아닌 기업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

1.6.3 유형

- 부당한 자금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행위
-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 계열금융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행위
- 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행위

■ 부당한 인력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 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 주체가 인건비를 미회수하는 경우

■ 부당한 거래 단계 추가 등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예시

-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 객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 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1.6.4 정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1.6.5 규제 목적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더 높다는 점 등을 감안,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총수일가에게 편법적으로 부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1.6.6 적용 요건

| | |
|-------|-----------------------------------------------------------------------------------------------------------------------------------------------|
| 제공 주체 |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 제공 객체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동일인이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6.7 위반 유형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구분 | 내용 |
|------|----------------------------------------------------------------------------------------------------------------------------------------------------------------------------------------------------------------------------------------------|
|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급금·대여금 등 자금,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 인력,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하고 있는 제공 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태만히 한 경우 제공 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제공 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제공 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제공 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한 경우 |
| 적용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 7% 미만 및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 총액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 |

■ 사업 기회의 제공

| 구분 | 내용 |
|----|-----------------------------------------------------------------------------------------------------------------------------------------------------------|
|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 |
|------|------------------------------------------------------------------------------------------------------------------------------------------------------------------|
|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주체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지원 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 적용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

■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구분 | 내용 |
|------|-------------------------------------------------------------------------------------------------------------------------------------------------------------------------------------------------------------------------------------------------------------------------------|
|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 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 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검토없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
| 적용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 및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6.8 적용제외

■ 공정거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

| 구분 |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
| <p>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 •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해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 거래 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 <p>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 기반 시설 등 필수 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
| <p>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6.9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 부당지원행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
| 관련규정 |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법 제47조 |
| 규제내용 |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금지 |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 지원주체 | 제한 없음 (모든 사업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 지원객체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회사 요건 불필요)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동일인이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 금지행위 유형 | ①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제공 행위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거래 | ①정상 거래 조건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사업기회 제공 ③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④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예외 |
| 부당성 판단 |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입증 필요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 지원 행위와 달리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6.10 법 위반시 제재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 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 과징금
 -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형사적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임직원이 업무에 대하여 위의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6.11 관련사례

■ 기업집단 K 소속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

사실관계

D사는 N사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매출원가보다도 낮게 설정하여 N사에 현저하게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였다. D사가 N사에 납품한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을 할수록 손실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K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N사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한 것으로,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N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함으로써 D사가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N사는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D사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N사는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기회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N사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K 소속 D사가 계열회사인 N사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과징금(잠정) : D사 2,435백만 원 / N사 1,245백만 원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기업집단 T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사실관계

H사는 '12년부터 제작 난이도, 인치별로 몰드 가격을 세분화하는 단가 정책 수립을 추진하였고, '14년 2월 M사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우선, H사는 M사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였는데,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H사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또한, H사는 신단가표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하였다. 아울러, H사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사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러한 신단가표 하의 거래조건은 H사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H사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M사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하였다. 이 사건 지원행위의 결과, M사는 지원기간 동안 높은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였고,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등 경쟁조건이 부당하게 제고되고 국내 몰드 제조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타이어몰드 고가매입 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도 훼손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T소속 H사가 M사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0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H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6.12 관련규정



■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8. (생략)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 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6.13 Q&A

Q. 개별정상금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나요?

A. 개별정상금리는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사이의 자금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 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들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유사한 상황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 시점의 금리 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 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봅니다.

Q. 정상 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나요?

A.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甲이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 양자에게 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정상 급여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A.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 양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1) 그 양자에 대한 근로 제공 및 대가 지급의 구분 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 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의 금액에서 해당 인력의 지원 주체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 급여로 간주합니다.
 (2) 그 양자에 대한 근로 제공 및 대가 지급의 구분 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 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 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 금액을 정상 급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인력 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한 거래 단계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A. 지원 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 객체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래상 지원 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 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 행위에 해당합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총수일가 지분보유비율이 낮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조항(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 규율 대상이 아닌 회사라도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Q.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규율 대상 회사간의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인가요?

A.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귀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직계열화, 거래비용 절감, 범위의 경제 등 효율성 목적을 위한 내부거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47조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내부거래로서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사업 기회의 제공,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금지 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쳐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A.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당연히 적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으로는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회사가 낙찰 받게 하기 위한 형식적 과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따르면 계열회사와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A. 일감몰아주기 금지규정이 수의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유로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검토없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신제품 광고 업무를 신제품 출시 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이미 검증된 계열 광고회사에 신제품 광고제작 업무를 위탁하였다. 효율성 증대 효과에 따른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반드시 내부 계열회사가 아니더라도 업무능력이 검증된 외부 광고회사와 거래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회사의 정보시스템에는 핵심적인 영업 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운영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계열 IT업체에 위탁하였다. 보안성에 따른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외부 IT업체에 정보시스템 운영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보안협약서 체결, 계약서상 보안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규정 마련,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6.14 업무상 유의사항(Dos/Don'ts)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Dos)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 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 형태로 분사화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 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지원 객체가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 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 객체가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 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관련 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 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 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Dos)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 거래 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 시설의 구축 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 거래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 경기 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지원 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계약상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면제하여 주는 경우
- 제공 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7 부당공동행위



1.7.1 정의

-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담합이라고도 함

1.7.2 규제 목적

- 부당공동행위는 기업에게는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함

1.7.3 공동 행위의 성립

■ 2이상의 사업자

- 2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합의의 존재

-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7.4 유형

| 구분 | 내용 |
|------------------------|-------------------------------------------------------------------------------------------------------------------------------------------|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 <p>가격인상, 인하, 유지하는 행위를 할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의하는 경우</p> <p>예) 세제 제조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 합의</p> |
| 상품·용역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 <p>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대가의 지급 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p> <p>예)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 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p> |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 <p>사업자 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운송·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 조건을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p> <p>예)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밀가루 총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한 행위</p> |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p>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 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p> <p>예) 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p> |
|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 <p>예) 사업자간에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합의하거나 신·증설을 방해·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p> |
|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 <p>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종류·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p> <p>예) 소주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p> |
| 영업의 주요 부문 공동관리 | <p>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p> <p>예) 정화조회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판매 창구를 단일화 하여 생산·판매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p> |
| 입찰담합 | <p>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사전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 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p> <p>예) 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입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p>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7.5 법 위반시 제재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
- 과징금
 -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형사적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임직원이 업무에 대하여 위의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 손해배상책임

-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손해배상책임
-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 범위 안에서의 손해배상책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7.6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 부당한 공동 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 또는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면제, 고발의 면제 가능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의 증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고(사후적 담합 적발), 사업자 간 불신 조장을 통해 담합을 해체·억제할 수 있음(사전적 담합 예방)
- 자진신고 순위별 감면 요건 및 감면 내용

| 구분 | 과징금, 시정조치 면제 |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 과징금(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 |
|----|----------------------------------------------------------------------|--------------------------------------------------------------|-----------------------------------------------------------|
| 요건 |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 |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
| |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을 것 |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 등에 협조했을 것 | 자진신고자등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등에 협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등에 협조했을 것 |
| | 부당한 공동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실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 | |
|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했을 것 | | |
| | | |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7.7 관련사례



■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담합

| 사실관계 |
|-------------------------------------------------------------------------------------------------------------------------------------------------------------------------------------------------------------------------------------------------------------------------------------------------------------------------------------------------------------------------------------------------------------------------------------------------------------------------------------------------------------------------------------------------------------------------------------------------------------------------------------------------------------------------------------|
| <p>H사 등 11개사는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p> <p>이 사건의 합의 내용은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낙찰받을 물량을 각 업체별 생산능력,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H사 A차장이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p> <p>입찰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모임 등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하였다. 입찰 공고 이후 조달청은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하였는데, 이 날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모임을 갖고 낙찰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였다. 이 사건 입찰은 조달청 입찰장에서 직접 입찰(현장 입찰)로 진행되었는데, 그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희망수량으로 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받았다.</p> |
|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
| <p>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H사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이중 7개 제강사 및 7개 제강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p>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투사재 제조 · 판매 사업자 담합

사실관계

투사재 시장의 치열한 가격 경쟁,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가격 상승, 중국산 등 수입 투사재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투사재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2017년 7월 말 경 국내산 제조 3사의 대표이사들은 유선연락을 통해 ①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②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사는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2017.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각 사가 공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각 사별로 공급실적이 있는 거래처와만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3사는 분할된 각 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사는 본 건 담합기간(2017.7월 말부터 2019.8.21.까지) 동안 최소 680차례 의사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 · 실행하였다. 3사는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들의 가격을 비교하여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하였다.

3사는 2017.7월 말경 최초 합의를 도출하여 담합을 시작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함으로써 합의가 파기되어 담합이 종료되었다.

본 건 담합기간 동안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게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7천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사실관계

이 사건 담합은 A사와 R사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출시라는 경쟁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A사 측은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 경, R사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R사 측은 당시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발표한 상황으로, 이는 A사 측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A사 측은 이 사건 계약을 대가로 R사 측의 복제약 생산·출시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며, R사 측도 복제약 생산·출시 금지를 전제로 A사 측과 협상하였다. A사 측은 이 사건 계약에 복제약 출시 금지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잠재적 경쟁자인 R사 측을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R사 측 또한 이 사건 계약을 자신과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내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을 복제약 출시 금지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보다 좋은 계약 조건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상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말 R사측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R사측에 부여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이 사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제약사인 R사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A사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7.8 관련규정



■ 제40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 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7.9 Q&A

Q. 몇몇 관련 업체들끼리 모두 모여서 가격 수준에 대한 의사교환을 한 경우도 가격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부당한 공동 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 간에 공동행위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합의가 존재한다면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부당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례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설정)를 위한 의사교환만으로도 부당한 공동 행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저희 회사는 일정 부품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업입니다. 합리적 제품 구매를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여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에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이 물품 구매에 있어서 그 가격을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Q.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 일부만 합의한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가 성립하나요?

A. 합의는 일정한 거래 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A사가 B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사와 B사가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도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나요?

A.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2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 간에 이루어진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입찰담합 제외)에 관한 합의는 부당공동행위상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와 B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시장 현황,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고 합의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합니다.

Q.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한 합의한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가 성립하나요?

A.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여 부당한 공동 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당한 공동 행위상 ‘가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A.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 가격, 기준 가격, 표준 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합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가동시간을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상품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하나요?

A.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 행위에 포함됩니다.

Q. 합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암묵리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간의 합의는 암묵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 제40조 제5항에 추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들 사업자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지라도 해당 거래 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또는 법 제40조 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Q. 공동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하나요?

A.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7.10 업무상 유의사항(Dos/Don'ts)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Dos)

-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인 경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해당 산업 내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것
 -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또는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것
 - 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만 해당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클 것
- 연구·기술개발인 경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해당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 거래 조건의 합리화인 경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거래 조건의 합리화로 생산 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 거래 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해당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할 것
 -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 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더 클 것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경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공동 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할 것
 - 공동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이하 ‘참가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일 것
 -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사업자별로 거래 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 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 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 포함)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영업 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
 -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
-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8 불공정거래행위



1.8.1 정의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1.8.2 규제 목적

-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시정 및 거래행태 개선을 위함

1.8.3 유형

-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다음의 9개 주요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한 고객유인
 - 거래강제
 - 거래상 지위 남용
 -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구분 | 내용 |
|-----------|-----------------------------------------------------------------------------------------------------------------------------------------------------------------------------------------------------------------------------------------|
| 거래거절 | <p>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p> <p>예) 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지 않은 사례</p> |
| 차별적 취급 | <p>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행위</p> <p>예) 소금제조사가 A, B 두 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A대리점에서는 현금결제비율을 50%로 하고 B대리점에서는 100%로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대리점에 비해 기존 대리점의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 소금공급비율도 적게 하여 차별취급한 사례</p> |
| 경쟁사업자 배제 | <p>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p> <p>예) 치약제조사가 경쟁치약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330만 개를 공급한 사례</p> |
| 부당한 고객유인 | <p>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p> <p>예) 제약업체들이 국내 병원에 자기가 생산·공급하는 의약품의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 채택비 (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p> |
| 거래강제 | <p>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p> <p>예) 음식점사업주가 자기의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음식점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기 음식점의 결혼의상 등 부대용품만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p> |
| 거래상 지위 남용 | <p>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예) 유명 브랜드 전자제품 제조사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황이나 상대방의 주문 의사에 상관없이 과대한 물량을 공급한 사례</p>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구분 | 내용 |
|----------|---------------------------------------------------------------------------------------------------------------------------------------------------------|
| 구속조건부 거래 |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 자사의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한 사례 |
| 사업활동 방해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 부당지원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1.6.1 부당지원행위 참고) |

1.8.4 법위반시 제재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과징금
 -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형사적 제재

-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위반행위는 제외)
-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임직원이 업무에 대하여 위의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8.5 관련사례

■ P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실관계

P사는 2017년 8월부터 S사와 P사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오다가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하였다.

P사는 이 사건 거래중단 과정에서 S사와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한편, P사가 S사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434천 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 · 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P사는 S사에 대하여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 P사는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S사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사에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를 적용하여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P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실관계

P사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P’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 6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타사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P사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P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P사가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따라서, P사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사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하여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Y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
|----------------------------------------------------------------------------------------------------------------------------------------------------------------------------------------------------------------------------------------------------------------------------------------------------------|
| 사실관계 |
| <p>Y사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u>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 7천만 원의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을 제공하였다.</u> Y사는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하여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였다.</p> |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 <p>공정거래위원회는 Y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u>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u></p> |

■ K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
|-----------------------------------------------------------------------------------------------------------------------------------------------------------------------------------------------------------------------------------------------------------------------------------------------------|
| 사실관계 |
| <p>K사는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u>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2.2억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u> K사는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하여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p> |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 <p>공정거래위원회는 K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u>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u></p>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8.6 관련규정



■ 제45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 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 대여금 · 인력 · 부동산 · 유가증권 · 상품 · 용역 ·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8.7 Q&A

Q. A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 A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저희 C회사와 각각 주택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자회사인 B회사에게는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 반면 저희 C회사에게는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지체상금과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독립된 거래 주체인 자회사와 비자회사 간에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자회사에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경영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A회사의 행위는 자기의 자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A회사는 경쟁사의 위치에 있는 B사를 배제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A.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회사가 부당 염매를 한다고 하여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만일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집단적 차별 취급과 부당한 공동 행위는 동일한 사항을 규제하는 이중적 규제 아닌가요?

A.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차별 취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당한 공동 행위와 달리 집단적 차별 취급은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차별 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차별 행위가 행해져야 합니다.

Q. 부당한 ‘고객’유인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이익 제공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됩니다.

Q. 소비자에 대한 거래 거절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나요?

A. 거래 거절의 상대방은 특정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거래상대방, 즉 소비자에 대한 거래 거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위탁매매인에게 판매 대상을 지정하는 위탁매매관계도 거래상대방 제한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나요?

A.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위탁매매인에게 판매대상 등을 지정하는 상법상 위탁매매관계는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해 거래상대방이나 거래 지역을 제한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나요?

A.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 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Q.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거래지역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이외의 조건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와 구별됩니다.

Q. 부당한 고객유인에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이익 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합니다. 제공되는 이익에는 적극적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 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제재하는 것은 민법상 거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요?

A.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민사 행위 등과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 개시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 하에 거래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적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특정사업자와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거래 계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가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 관계, 채권채무관계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8.8 업무상 유의사항(Dos/Don'ts)

거래 거절의 정당한 사유(Dos)

-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 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 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 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 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거래 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거래 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Do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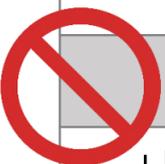
-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 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 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차별 취급의 정당한 사유(Dos)

- 가격 차별이 거래 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 당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 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 경우(Do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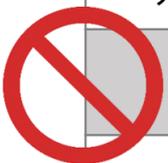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 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 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 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 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경쟁사업자 배제의 정당한 사유(Dos)

-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 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로 판매하는 경우
- 신규 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 계속적 염매 또는 일시적 염매, 부당고가매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계속적 염매 또는 일시적 염매, 부당고가매입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부당한 고객 유인의 정당한 사유(Dos)

- 이익 제공(제의)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부당한 이익 제공(제의)을 함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후생증대효과가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 경우(Do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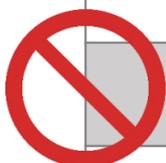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 · 의뢰 · 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이라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 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미끼상품)
-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 현황, 제품 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 ·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거래 강제의 정당한 사유(D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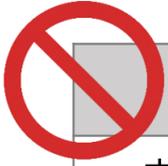
- 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 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끼워팔기·기타의 거래 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도발생 등 사원 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 강제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 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자신의 계열 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 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인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 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합리적 이유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 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 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 광고시 자기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구속조건부거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Dos)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 · 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 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구입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선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생산(또는 판매)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병행 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자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독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사업활동방해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Dos)

- 기술을 부당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처 이전을 방해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의 사업활동을 방해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 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 사업 영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 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 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2 하도급법



2.1 정의

- 정식명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특정한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특별법

2.2 제정 목적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3 개요

2.3.1 용어설명

- 하도급거래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 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 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 원사업자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중소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다른 중소기업(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2.3.2 주요내용

| | | |
|-----------------------|--------------------------|---------------------|
| 원사업자 의무사항 (9개) |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 선급금 지급 |
| | 내국신용장 개설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
| | 하도급대금 지급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 | 관세 등 환급액 지급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 |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 |
| 원사업자 금지사항 (13개) | 부당한 특약 금지 | |
|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
|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 |
| |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
| | 부당 반품 금지 | |
| | 감액 금지 | |
|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금지 | |
| |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 |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 |
|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
|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
| | 보복조치 금지 | |
| | 탈법행위 금지 | |
| 발주자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
| 수급사업자 의무, 준수사항 | 서류 보존 | 건설 하도급대금 계약이행보증 |
| | 신의성실이행,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금지 |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2.3.3 주요 원사업자 의무사항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전자 서면 포함)을 사전(제조는 물품납품 위한 작업 시작 전, 공사는 착공 전, 용역은 용역 수행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서면기재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 · 시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품명 · 수량 · 제공일 ·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서류의 보존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서면 보존

| | |
|---------------------------------------------------------------------------|--------------------------------------------------------|
| 계약서 |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
| 수령증명서 | 대금 지급일 · 지급 금액 및 지급 수단 (어음으로 지급 시,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 |
| 선금금, 어음할인료, 수수료, 관세 등 환급액, 지연 이자의 지급일 및 지급 금액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제한 경우, 제공한 원재료 등의 내용, 공제일·공제 금액·공제 사유 | |
| 감액한 경우, 감액 사유·기준·대상 물량·금액·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의 사본 | |
|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조정 금액 및 사유 | |
| 수급사업자 등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 내용 및 협의내용, 조정 금액 및 조정 사유 | |
| 입찰 명세서, 낙찰자 결정 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서류 | |

- 서류의 보존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서면 보존

| |
|---------------------------------------------------------------------------------|
| 기술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요구 목적·권리귀속관계·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명칭 및 범위·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의 사본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
 -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 수급사업자 :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 내용의 확인 요청 가능
 - 원사업자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선급금 지급 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 전에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법정지급기일) 지급
- 15일 초과 지급 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15.5%)지급.
-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지급 시 15일이 초과한 시점부터 어음의 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까지, 어음할인료(연 7.5%) 또는 어음대체수수료 지급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결정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법정지급기일의 결정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
|-------------------------------|--------------------|
|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 목적물의 수령일 |
|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경우 | 약정한 지급기일 |
|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후로 정한 경우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되는 날 |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 현금 지급 시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금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비율

- 어음 지급 시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 교부 금지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15.5%) 지급
- 60일이 초과한 시점부터 어음의 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까지 어음할인료(연 7.5%) 또는 어음대체수수료 지급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2.3.4 주요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 특약의 금지

- 다음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서면에 미기재된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 결정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 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 결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결정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 포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부당 반품의 금지

-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 금지
- 부당반품으로 간주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감액 금지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부당감액으로 간주하는 행위
 - 위탁 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의 금지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행위 금지
 -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게 하는 행위
 -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해당 서면 교부
-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 자료의 범위,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의무적 체결
-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간주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금지
- 예외
 -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 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보복조치의 금지

- 다음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탈법행위의 금지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금지

2.3.5 법 위반시 제재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 명령,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
-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 3년간 법 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3년간 벌점 5점 초과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 3년간 벌점 10점 초과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과태료 부과
 - 조사 불출석자, 자료제출명령 불이행·허위자료 제출자
: 사업자(단체) 1억원 이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 1천만 원 이하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자
: 사업자(단체) 2억원 이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 5천만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요구한 자
: 원사업자 5천만원 이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 500만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한 자
: 원사업자 500만원 이하
 -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

■ 사법적 제재(공정위 고발)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금지 위반자
-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경영간섭,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 손해배상 책임 : 손해액의 3배 배상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한 위탁 취소
 - 부당 반품
 - 부당 감액
 - 기술자료 제공요구
 - 보복조치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2.3.6 관련사례

■ S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실관계

S사는 2014.1.15.~ 2015.11.2. 기간 동안 A사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 1일~29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S사는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한 시점에 개별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자서명완료일을 서면발급일로 보아 서면발급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르면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완료 후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서면발급의무 위반혐의 건들 중 상당수가 수정추가공사로서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원사업자의 계약요청서 송부만으로는 서면의 발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면발급의무의 규정 취지는 위탁 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이며 ‘경미’하다는 것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계약별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S사는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N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실관계

N사는 B사로부터 다운점퍼 2가지 품목을 제조위탁한 후 2013.11.13. 및 같은 해 11.18.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기 납품한 제품에서 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반품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N사는 다운점퍼를 수령한 후 대리점 판매과정에서 오리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제품 불만이 제기되자 이후 검사기관에 다운점퍼에 대해 깃솜털 투과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후, 이에 B사에게 A/S를 요구하였으나, B가 거부하는 바람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N사가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적물 수령 후 물품 관련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N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사가 B사에게 다운점퍼 2가지 품목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B사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N사가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B사에게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S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실관계

S사는 2015.11.5.부터 2018.11.4. 기간 동안 C사 등 142개 수급사업자에게 철의장품, 배관류, 전장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한 후 발주처 요청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있다.

또한, S사는 위탁취소·변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PCR시스템을 통해 기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수급사업자들로서는 요청에 대하여 동의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을 뿐 그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할 수 없었고 위탁취소·변경에 대한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탁취소·변경을 요청받은 수급사업자들은 그 사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한 ‘승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 여부에 대하여 묻는 항목 자체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S사의 취소·변경 사유를 보면, 설계변경, 발주처 요청, 협력사 요청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변경과 발주처 요청의 경우는 전적으로 S사 측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협력사 요청의 경우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PCR 시스템을 통해 위탁취소·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단지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으며 수급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S사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며, 사내 협력사들이 사용하는 사내 게시판 및 S사 홈페이지 화면에 팝업 형태로 게시하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3,61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P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관계

P사는 2014.2월부터 2017.7월까지 D사 등 6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운대 LCT 복합개발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특약에는 ①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②설계나 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④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 있다.

P사는 2016.3월부터 2019.3월까지 I사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5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P사는 2016.1월부터 2018.8월까지 ‘경산 중산지구 전기관로설치공사’ 등 14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E사 등 5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전기공사’ 등 66건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통지하였으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P사는 2016.7월부터 2018.12월까지 ‘분당수지 유타워 신축공사’ 등 12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F사 등 32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P사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14백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D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관계

D사는 에어 컴프레셔 공급처를 변경하기 위하여 2016.3.11., 3.14. 기존 에어 컴프레셔 공급처인 A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인 B에 전달하여 B가 빠른 시일 안에 자신에게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하도록 B로 하여금 미흡한 에어 컴프레셔 제작기술을 보완하게 한 사실이 있다. 또한 D사는 새로운 공급자가 적합한 품질의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A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D사는 B사가 2015. 11월 경 이미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완료하여 피심인에게 시제품을 납품하였으므로 2016.3월 경 이와 관련한 기술자료를 유용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에어탱크 용접기호, Note 수정, 실리콘 처리 보완 등은 단순착오에 기인한 오류를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수정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을 D사 또는 B사의 기술적 역량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A사와 B사의 도장 사양이 동일한 것은 피심인의 도장 제조표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고 분체도장 방식으로 도장한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B사의 자료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가 2016년 8월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판매하였고, 그 전까지는 주로 에어 컴프레셔 전용 제어장치만을 공급하였던 점과 D사와 B사 간 오고 간 이메일 내역을 통해 D사가 품질검사 외의 목적으로 자신과 B사의 이익을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D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총 38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D사의 관련 자들을 고발조치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P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관계

P사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인사·자본·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여 왔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P사가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P사는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하였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P사가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회사·임원 구분)에 반영되어,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P사는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의 인사에 개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협력사 임원만기 만료 임박 시 P사가 자사 직원 중 후임자(부장급 이상)를 선발하면 후임자가 전임자(임기만료 임원)의 지분을 인수하여 협력사 전임자 직책에 부임하는 방식이다. 2019년 경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P사는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하였다. 특히, ①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하여 만료 시 P사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부임토록 하고, ②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섭하였다.

P사의 행위는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경영사안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사가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2.3.7 관련규정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 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수리 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제5조(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6조(선급금의 지급)

-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 제8조(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 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9조(검사의 기준 · 방법 및 시기)

-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既成部分)을 통지 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을 통지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 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부당 반품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 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1조(감액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7.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제12조2(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 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부터 60일 이내에 어음 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항, 제24조의4 제1항, 제24조의5 제6항,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 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6조의2(공급 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 등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 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 등의 공급 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불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 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율보다 낮은 경우

■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 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 제18조(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 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
 -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2.3.8 Q&A

Q.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당사는 하도급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선급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에서는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선급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나요?

A.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은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법 시행령 별표1의 연간매출액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연간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부터 10항까지 및 제19조 등을 적용할 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는 원사업자로,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3조 제11항은 예외적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같은 조 같은 항에 나열된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6조는 법 제13조 제1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법 제6조는 중견기업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저희 회사는 제조 위탁을 A회사로부터 수급 받아 목적물을 생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보내둔 상태며, 검사결과를 원사업자로부터 통지 받아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는지와 그 검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이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로 인한 대금 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검사 기준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A군에서 발주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체결 과정에 있어 먼저 견적 입찰을 실시하였고 계약 과정에 있어 우리 사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있다고 하며 계약금액을 감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하여 부득이 감액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하였던 견적 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A회사는 비인기 제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나중에 인기 제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구두)하였으나 정작 손실의 일부만을 보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것처럼 기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할 것이며 하도급법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원사업자인 A회사는 저희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두어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저희 회사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가요?

A.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의 전형적인 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Q.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의 차이가 존재하나요?

A.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어음교부일부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과합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A건설은 수십 개의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적인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가 미분양이 될 경우 이를 구매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지요?

A. 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A건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은 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Q. 발주자가 지급한 어음이 타인 발행의 어음인 경우, 그 지급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발주자가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 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봅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고객사(A)가 협력사(B)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타 업체(C)에게 전달한 경우입니다. C는 A와 B 사이의 유통업체이며, C는 해당자료의 출처 등에 대해 사전공지 받지 못하였고, B의 기술자료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1-1) 자료를 수취 받은 C 업체도 기술 문서의 관리 의무가 있나요?

1-2) C사가 해당 자료를 입찰 등을 위하여 타 업체(D)에게 공개했을 경우 기술자료 유용/유출 행위로 판단되나요?

2. 기술 자료의 형태가 문서가 아닌 경우에도 기술자료 범주에 포함되나요?

A. C는 B와의 관계에서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C는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자료 보호 의무가 없고, C에게 기술유용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가 C의 행위를 지시하였거나, C의 행위를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A에게 기술유용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C는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는 반드시 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가, 납기 정보는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기술 자료의 정의에 의거 기술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서 기술 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저희 회사는 수급사업자로 A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어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목적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물품 구매강제행위에 해당하나요?

A.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의뢰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물품의 구매강제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선급금은 항상 지급해야 하나요?

A.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 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A.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Q.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비율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 비율을 산술 평균한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현금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 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Q.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약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나요?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는 법 위반행위입니다.

Q. 부당한 경영간섭금지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A.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정보제공의 목적과 무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의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Q. 포괄적으로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제조 위탁을 요구하고 그 발생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 특약에 해당하나요?

A.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수량·단위 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합니다.

Q.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법 제3항에 따른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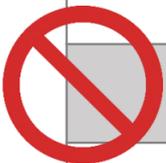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2.3.9 업무상 유의사항(Dos/Don'ts)



적법한 서면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Dos)

- 기본 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 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수출용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 매도확약서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서면 미발급 또는 불완전 서면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Do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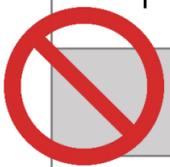
-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
-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 추가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 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발급으로 봄
-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 공사에 대한 금액 산정이 가능한 약식 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Dos)

-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 결정이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 가격이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과업과 관련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원사업자 자진 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 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추가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임시 단가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입찰 조건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최저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와 단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닌 경우(Dos)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일방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공사현장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에 대한 임금·자재·장비 대금을 미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다른 사업자의 신형 모델 출시로 해당 목적물이 부속되는 제품의 판매부진이 현실화 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 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사양 변경·모델 단종·생산계획 변경·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 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 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부당한 수령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계약서면에 위탁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 단축을 통보한 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구두로 추가 위탁을 한 후 목적물의 일부는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당초 서면계약서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며 위탁 사실을 부인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부당 반품에 해당하는 경우(Do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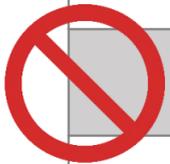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발주자·외국수입업자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 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 변경·모델 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장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검사기준·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행위
-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 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의 정당한 사유(Dos)

-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 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Do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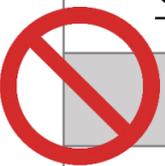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으로 인해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 법정 검사 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구두로 납기 등을 연기한 후 당초 서면계약서상의 납기를 준수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여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이 목적물을 발주 또는 납품할 당시까지는 변동이 없었으나, 발주 또는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시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전년도의 임직원 임금인상, 신규투자증대, 판매부진, 환율변동 등에 따른 적자폭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D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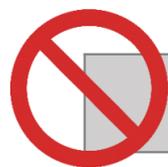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교부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폐기물·소음·진동·먼지·오수·폐수 등)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품질 및 시공 검사를 위한 시험 절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자라고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별도 표기하지 않고 견적 단가에 포함하여 견적하여야 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정
- 하도급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단가의 변동이 발생시 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 내용의 확인을 일체 요청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의 소유권은 모두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단,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위탁 등은 제외)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Dos)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 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생산 품목 · 시설 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 · 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 인력, 재료 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기타 하도급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원사업자가 기존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하도급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동종업계 다른 원사업자들로 하여금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 협조를 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정지, 수주기회 제한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합리성·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통용되지 않는 수단·방법을 활용해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부록 ①] 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

■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 | 전원회의 | 소회의 |
|--------|---------------------------------------------------------------------------------------------------------------------------------------------------------------------------------------------------------------------------------------------------------------------------|--------------------------------------------------------------------------------------------------------------------------------------------------------------------------------------------------------|
| 의장 | 위원장 | 상임위원 |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64조 제1항) | 구성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64조 제2항)) |
| 소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원회의의 소관사항 외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건 • 승인·인정·인가 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 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 요청) |

■ 심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 심결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 과정을 일컬음
- 심사관
 -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
 - 이러한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됨
 - 물론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게 됨
- 피심인
 -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사업자를 말함
- 이의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피심인 중 당해 처분에 불복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를 말함

■ 공정 거래 사건 처리 절차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절차는 ① 인지 단계 ② 조사 단계 ③ 위원회 상정 ④ 위원회 심의 ⑤ 합의 ⑥ 의결 ⑦ 의결서 송달 ⑧ 불복 등으로 구성됨

1. 인지 단계

[부록 ①] 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

■ 인지 단계

-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가능 (공정거래법 제80조)
- 위반 혐의는 직권 인지가 원칙이고, 신고 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
- 신고 접수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 조사·심사 단계

- 사건 심사 착수 보고(사건번호, 사건명 부여)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 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조치 의견을 제시
-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

■ 심의·의결 단계

-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 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 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 참가, 심사관의 조치 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
-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합의하는 과정(공정거래법 제65조)

■ 의결 결과 통지

-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됨 (공정거래법 제68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재심사 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 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음

[부록 ①] 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

■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 사전 의결청취절차 제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안건의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심의에 앞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진행 하에 주요 쟁점에 대한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 심의 속개제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심의 분리제

공동 행위와 같은 위반행위 건에 대한 심의시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과 별도로 심의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

- 출석 시차제

해당 안건의 심의 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의시작 시간까지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 등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당 안건의 심의 시간을 예측하여 그 시간에 맞도록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제도

- 기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공개, 프리젠테이션 시설의 설치·운영, 외국인들의 심의 참가시 편의제공을 위한 통역 부스 설치 허용 등 다양한 심결 절차 응용

■ 불복 절차

-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 공정위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공정거래법 제96조)
-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공정거래법 제97조)

- 행정소송

-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부록 ①] 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

■ 사전심사 청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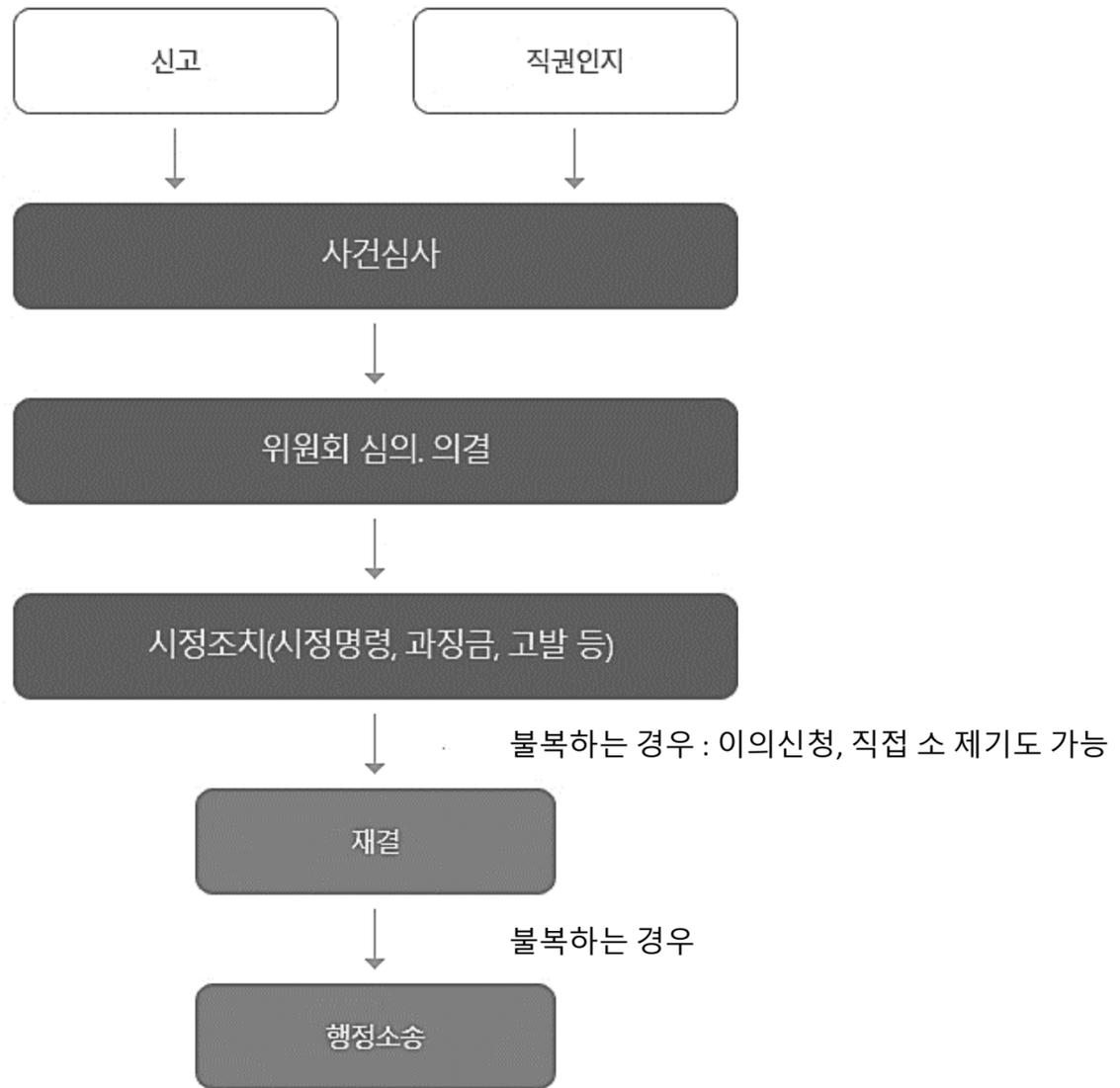
- 사전심사 청구 제도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주는 제도를 말함
-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 의견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함
- 다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 자료부족으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확정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함

■ 동의를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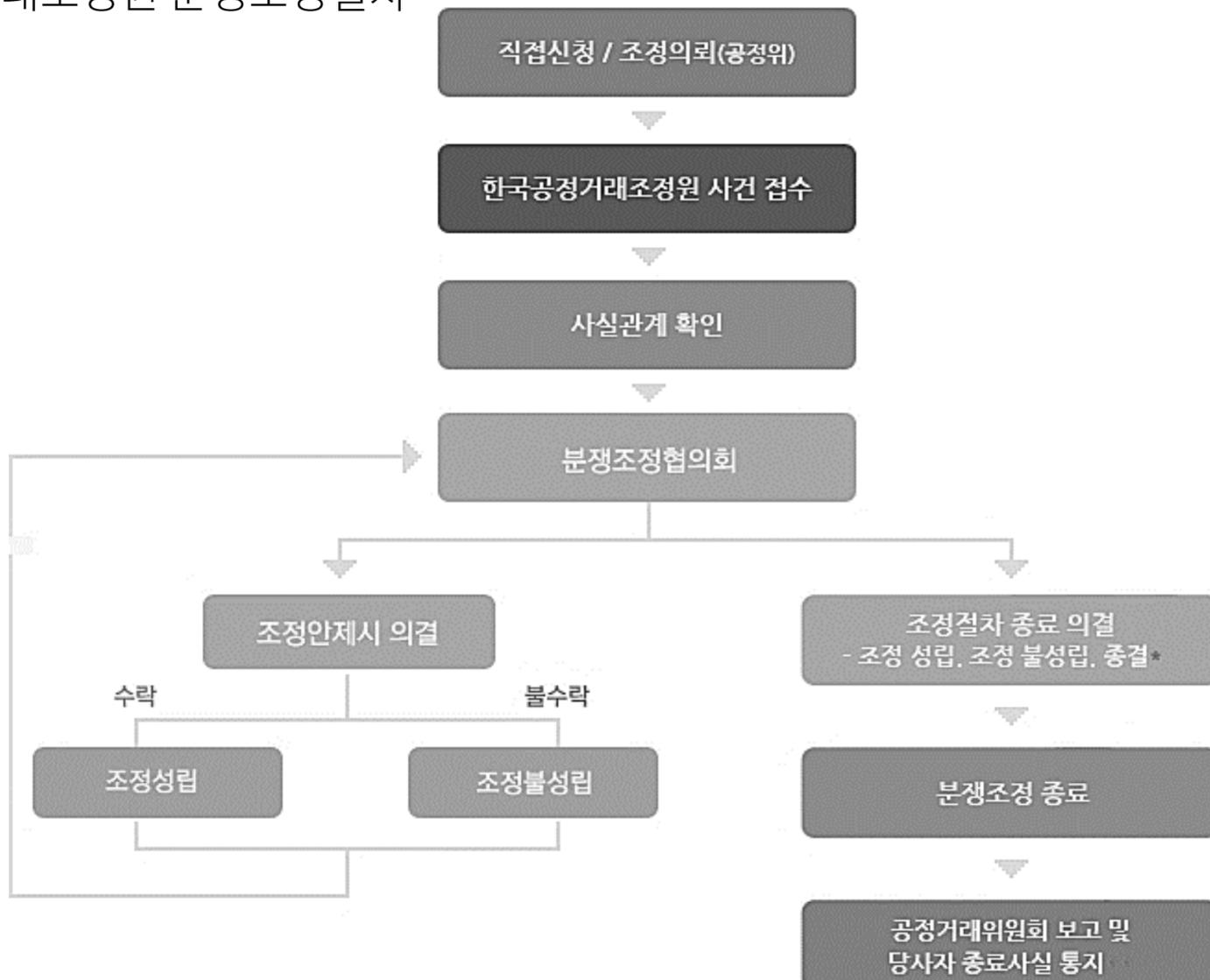
- 동의를결제도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함
- 동의를결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 기업 판정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피규제자의 동의를 얻어 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소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소비자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통상의 시정조치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가격 인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부록 ①] 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절차



* 취하, 소제기, 각하, 조정안 미제시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조정원의 통지 공문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부록 ②] 준법통제기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시행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법통제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법통제’란 회사가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 활동 과정을 말한다.
2. ‘법적 위험’이란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3. ‘준법지원인’이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 ① 준법통제기준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 ② 준법통제기준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준법통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준법통제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제4조(제정 및 개정)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

제2장 준법통제환경

■ 제5조(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의 기본 원칙)

준법 통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은 준법 통제 업무의 효율성과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부록 ②] 준법통제기준

■ 제6조(각 기관의 역할)

- ①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준법통제체제를 정비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지를 감독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회는 준법통제업무를 관장할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준법통제체제를 구축·정비·운용하고 그 작동상황을 감독한다.
-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준법통제업무를 실무적으로 통괄한다.

■ 제7조(준법지원인의 임면)

- ①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② 대표이사는 준법지원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준법지원인을 해임할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 ③ 준법지원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며, 임기 중 해임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제2항 각호의 해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준법지원인은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준법지원인이 해임되거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신속하게 새로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준법지원인의 자격, 임기 및 지위)

- ①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임 되어야 한다.
- ②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다.
- ③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록 ②] 준법통제기준

■ 제9조(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

- ①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1.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2.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3.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 요구 및 진술의 요구
 4.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5.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6.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7. 준법 업무 보조 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정
 8.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시 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0조(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 ①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준법지원인은 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진다.
- ④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11조(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

준법지원인은 준법 관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부록 ②] 준법통제기준

제3장 준법통제활동

■ 제12조(법적 위험의 평가)

- ①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제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제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발생 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위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제13조(법적 위험의 관리)

- ① 임직원은 업무상 법적 위험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준법통제기준, 회사의 각종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준법통제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각 관련부서와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이 타 부서로 이전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임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 ①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준법 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 준법 교육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준법 교육

[부록 ②] 준법통제기준

2. 채용시 준법 교육 : 신규채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준법 교육
 3. 특별 준법 교육 : 준법지원인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준법 교육
- ③ 준법지원인은 제2항의 준법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 ⑤ 준법지원인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운영과 별도로 업무상 법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일상적인 준법지원)

- ①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임직원이 계약체결 등 법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법지원인과 사전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준법지원인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임직원이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업무상 제기되는 법적 위험 또는 준법 관련 쟁점에 관하여 준법지원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점검)

- ① 각 부서는 자율적으로 준법 교육을 포함한 준법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각 부서는 효과적인 자율 준법 점검을 위하여 점검사항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준법점검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자율 점검 실태를 평가한다.

[부록 ②] 준법통제기준

■ 제17조(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

- ① 준법지원인은 모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준법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 ② 준법지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준법 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제기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 점검이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효율적인 준법 점검을 위하여 부서별로 신고나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의 신고나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다.
- ④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⑤ 준법지원인은 준법 여부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 제18조(내부 제보)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등에 관하여, 준법지원인 등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내부 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내부제보자가 본인이 관련된 위법이나 부정을 제보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모든 내부제보자는 내부 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제19조(위반 시의 처리)

-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부서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중지·개선·시정·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등과 상의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준법지원인은 위의 보고 또는 건의 전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개선·시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록 ②] 준법통제기준

- ③ 준법지원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발방지방안이 결정되면 준법지원인은 이를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선 시에 반영한다.

■ 제20조(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

- ①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준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 임직원에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준법 통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통합 정보관리장치를 마련한다.
- ③ 준법통제체제에서 형성된 정보나 자료는 3년 이상 보관한다.

제4장 유효성 평가

■ 제21조(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①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회사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법통제기준의 내용·법적 위험의 평가 및 관리 체제·준법 점검 및 보고 체제·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체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체제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 22 조(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 ① 이사회는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비나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 ② 대표이사는 유효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부록 ②] 준법통제기준

제5장 기타

■ 제23조(임직원의 포상)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 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 제24조(세부사항)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2019. 10. 22.)

이 기준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③]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준법경영원칙 및 사업 관련 제반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 대리인 및 협력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사업 관련 법 등 이란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각종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말한다.
- ② “자율준수”란 회사의 임직원이 사업 관련 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규제 당국 등” 이란 사업 관련 법 등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말한다.
- ④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라 한다)”이란 자율 준수를 위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 제4조(선임)

- ① 회사는 효율적인 CP의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임원 중에서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선임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 결원 시 그 후임자 선임까지 자율준수관리자 소속 조직의 차상위 직급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독립적 업무수행)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부록 ③]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1. 자율준수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2. 자율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3. 직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 자료의 수집과 제출 요구 및 진술의 요구
4. 임직원에 대한 자율준수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5. 사업관련 법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6. 이 규정의 개정안 발의
7. 기타 이사회가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 시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CP의 운영과 관련된 계획 수립
2.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3. 자율준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4. 사업 관련 법 등 및 이 규정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5. 자율준수 행동강령의 제 개정 및 운영
6. 자율준수 활동 상황에 기록 및 관리
7. 규제당국 등과의 업무 협조
8. 내부 고발 시스템 개발 및 관리
9. 전담부서인 준법지원팀 통솔 및 관리
10. CP의 운영과 관련된 대외 인증 평가 업무 수행 CP 등급평가 ISO 37001, ESG 등
11.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록 ③]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또한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에 대한 불비나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업 관련 법 등이나 이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 충분한 지원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CP의 운영에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담부서)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② 전담부서를 구성할 경우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절 CP 위원회

■ 제11조(CP 위원회 구성)

- ① CP 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직원의 포상과 제재, 기타 회사의 CP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안을 심의한다.
- ② CP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위원은 자율준수관리자를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부서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사안에 따라 위원 구성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CP 위원회의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 제12조(CP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 ① CP 위원회는 반기 1 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2 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CP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에 대한 심의·의결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재발 방지 등 필요 조치의 권고·자문

[부록 ③]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3.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공유 및 협조 논의
4. CP 관련 사내 규정·지침 등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5. CP 모범 임직원의 포상 또는 위반 임직원의 제재에 대한 심의
6. 기타 회사의 자율준수를 위하여 회부 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 제13조(CP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주관부서는 CP 위원회의 소집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개최 1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CP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동수될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절 사전업무협약제도

■ 제14조(사전업무협약제도)

- ① 사전업무협약제도는 업무 등의 수행 전 공정거래 법규 및 사업 관련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감시체계이다.
- ② 사전업무협약제도는 사업 관련 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준법지원팀과 미리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한다.

■ 제15조(사전업무협약의체 구성)

- ① 사전업무협약의체의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하며, 위원은 준법지원팀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부서 실무진으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은 심의 사안에 따라 위원 구성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사전업무협약의체의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 제16조(사전업무협약의체의 운영 및 역할)

- ① 사전업무협약의체는 분기1회 정기협의체를 개최하고, 의장 또는 2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사전업무협약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전업무협약제도 역할을 수행한다.
 1. 관련 업무 수행 전,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 검토

[부록 ③]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필요조치 시행 및 재발방지
 3.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체크리스트 등의 모니터링 수행
 4. CP 관련 사내 규정·지침 등의 변경에 대한 의견 개진
 5. CP 모범 임직원에 대한 추천
 6. CP 위반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필요 조치 수행
 7. 기타 회사의 자율준수를 위하여 회부되는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토의 및 적용
- ③ 주관부서는 사전업무협의체의 운영 현황, 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7조(사전업무협의체의 소집 및 의결)

- ① 주관부서는 사전업무협의체의 소집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개최 1일 전까지 각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전업무협의체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동수될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절 임직원

■ 제18조(의무)

- ① 임직원은 이 규정 및 사업 관련 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전담부서가 진행하는 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이 규정, 사업관련 법 등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자율준수관리자(또는 전담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 또는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또는 전담부서)의 자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부록 ③]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제3장 CP의 운영

■ 제19조(자율준수 의지의 선언)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을 준수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 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의지를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20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CP의 기준과 절차 및 사업 관련 법 등을 포함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한다.
- ③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1조(모니터링 제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매년 1 회 이상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 에 대한 위반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 에 대한 위반 우려가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담부서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CP의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 위반 및 부패 관련 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시상 및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상 및 제재조치의 기초가 된 평가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록 ③]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 제22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교육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신규 입사자와 승진자는 신규 입사 및 승진 확정후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규정 및 사업 관련 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구매, 영업 등 사업 관련 법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 대상 교육은 집합 교육, On-line 교육 및 관련 자료의 게시 또는 배포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 법령상 중요한 변경 및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의 교육 이수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여 교육을 누락하는 임직원이 없도록 관리하고, 교육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 ⑦ 교육 실시에 필요한 내용은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정에 따른다.

■ 제23조(사업 관련 법 등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 사업 관련 법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2. 사유서 제출
 3. 경고
 4.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및 의견 제시
- ② 제재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른다.

■ 제24조(포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의 준수여부 점검결과가 우수한 자

[부록 ③]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1.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2. 자율준수 교육이수 우수자
3. CP 관련 우수 제안자
4.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 관련 퀴즈 응모 혹은 시험 응시 우수자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자

② 포상 대상자 및 규모는 대표이사 보고 및 승인에 따라 결정한다.

■ 제25조(내부 신고)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통하여 즉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준법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V-GMP : Better KOLMAR - 윤리경영 위반행위
2.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8 길 61(내곡동) 윤리경영그룹 자율준수관리자
3. 홈페이지 제보 코너 : <https://www.kolmar.co.kr/>

② 자율준수관리자 및 전담부서는 임직원이 전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제26조(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보관되어야 한다.
- ③ 보관에 필요한 내용 및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문서 등의 작성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27조(운영성과 및 유효성 평가)

- ① CP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부록 ③]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승인 하 회사 내의 CP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 · 운용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제28조(공시)

회사는 CP의 운영 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주기적으로 공시한다.

■ 제29조(세부 지침에 대한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개정

■ 제30조(개정의 필요성)

사업 관련 법 등의 개정 및 회사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변화된 사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 제31조(개정 절차 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련 법규 등 개정에 따라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 ② 전면 개정의 경우에는 전항의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2조(제재)

이 규정 제정 이전의 행위에는 이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제3 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록 ④] 내부거래 관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콜마홀딩스(주)(이하 “한국콜마홀딩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한국콜마홀딩스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를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2. 기업집단: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와 그 회사가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3. 특수관계인: 다음에 열거한 자를 포함하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하 ‘동일인’)
 - 2) 동일인관련자
 - ①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④ 동일인 및 동일인과 ②호 내지 ④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통의 목적으로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제3조(적용범위)

1.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 활동에 적용한다.

[부록 ④] 내부거래 관리규정

3. 내부거래는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 ①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 거래
 - ②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 거래
 - ③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
 - ④ 상품·용역의 거래
 - ⑤ 인력의 제공
4. 기업집단 내 회사가 역할을 하지 않는 거래 또는 다른 회사의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내부거래에 포함한다.

■ 제4조(적용범위)

한국콜마홀딩스 기업집단의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심사·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장 내부거래의 원칙과 절차

■ 제5조(내부거래의 원칙)

1. 회사는 사업상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내부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 반드시 복수의 제안을 받아 검토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내부거래의 승인절차)

1.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지정된 승인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내부거래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는 상품을 매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수행한다.
3. 한번 승인을 받은 거래는 1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품목이 달라지거나 거래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내부거래 유형별 승인자는 [별첨1]에 의한다.

[부록 ④] 내부거래 관리규정

■ 제7조(내부거래의 승인에 필요한 문서 및 필수기재사항)

1. 내부거래의 승인을 위한 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 ①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
 - ② 내부거래 거래상대방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자이어야 하는 사유
 - ③ 내부거래의 목적과 시기 또는 기간, 규모
 - ④ 내부거래의 조건 및 그 산정 근거
2. 내부거래 승인을 위한 문서에는 다음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거래계약서 초안(계약서 초안이 없는 경우에는 중요 계약조건 요약)
 - ② 체크리스트[별첨2]

제3장 기타사항

■ 제8조(사후관리)

한국콜마홀딩스 CP 전담부서는 정기적으로 기업집단내에서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적절한 사전 승인을 거쳤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CP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CP 전담부서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CP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CP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 회부 또는 대표이사 보고 등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한국콜마홀딩스의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2021.5.3)

이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④] 내부거래 관리규정

[별첨1]

| 거래의 유형 | 승인자 |
|---------------------------|--------------------------------------|
| 제품 또는 상품, 반제품의 공급* | 제1결재자 : 홀딩스 재무팀 |
| 용역이나 서비스의 제공 | |
| 자금의 대여 또는 보증의 제공 | |
| 유가증권 등 자산 거래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 |
| 인력의 제공 | 제1결재자 : 홀딩스 인사총무팀 제2결재자 : 홀딩스 재무팀 |

(*) 건당 500,000,000원 이하의 거래는 적용하지 않음.

[별첨2]

1. 일반 검토 사항

| | 체크포인트 | 예 | 아니오 |
|---|-------------------------------------------------------------------------------------------------------------------------------------------------------------------------------------------------------------------------------------|---|-----|
| 1 | 해당 계열회사와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사내 법무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 |
| 2 |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해당 계열회사를 최우선순위업체로 선정하(였)는가? | | |
| 3 | 수의계약시에 해당 계열회사와 거래하여야 하는 특수한 이유나 근거(예: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가 있는가? (예시) • 효율성 : 비계열회사와 거래할 경우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과 • 보안성 : 계열회사와 거래하지 않을 경우 영업비밀이나 정보의 유출로 큰 경제적 피해 초래 • 긴급성 :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계열회사와의 거래 불가피 | | |
| 4 | 해당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다른 비계열회사와 거래할 경우와 비교하여 더 유리 또는 불리한지 확인·검토하(였)는가? | | |
| 5 | 다른 제3의 회사와의 거래에 해당 계열회사를 중간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는 경우인가? | | |
| 6 | 해당 계열회사가 거래 단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 | |

[부록 ④] 내부거래 관리규정

[별첨2]

2. 거래 특성별 검토 사항

| | 체크포인트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
| 1 | (제품, 상품, 반제품의 공급/용역, 서비스의 제공) 비계열회사와 해당 상품 및 용역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보다 높거나 낮게 지급하였는가? | | | |
| 2 | (기술 로열티 거래)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여 보유한 일체의 기술을 계열회사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가? | | | |
| 3 | (자금관련 거래) 계열회사가 외부차입이나 거래를 함에 있어 아무런 정당한 대가 없이 담보나 보증(보증 유사 행위 포함)을 제공해주었는가? | | | |
| 4 | (부동산 임대차) 계열회사 사이에 공장, 매장, 사무실 등을 임대차하면서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임대료를 정하였는가? | | | |
| 5 | (인력의 제공) 회사의 직원이 당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계열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 그 인력 비용을 계열회사와 적절히 분배하지 않았는가? | | | |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하도급거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①관련 법령의 준수, ②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 ③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달성, ④이를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이드라인의 구성)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2.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3.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4.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제2장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제1절 목적 및 구성

■ 제3조(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 사항의 목적)

이 실천 사항은 협력업체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가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4조(구성)

이 실천 사항은 계약체결 전 회사가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 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제2절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 제5조(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① 회사는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체결방식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계약체결방식의 종류(예시)

1. 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2.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지명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회사는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 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한 선택기준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계약 방식 선택의 기준>

| 거래상대방 | 많음(5개사 이상) | 적음(5개사 이하) |
|---------|----------------|----------------|
| 물품의 중요도 | | |
| 높음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수의계약 |
| 낮음 | 일방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 계약체결방식 | 요건 |
|--------|----------------------------------------------------------------------------------------------------------------------------------------------------------------------------------------------------------------------------------------------------------------------------------------------------------------------------------------------------------------------------------------------------------------------------------------------------------------------------------------------------------------------------------------------------------------------------------------------------------------------------------|
| 수의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혹은 마감 공사의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 일반경쟁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기준 없음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 계약체결방식 | 요건 |
|--------|------------------------------------------------------------------------------------------------------------------------------------------------------------------------------------------------------------------------------------------------------------------------------------------------------------------------------------------------------------------------|
| 제한경쟁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p>※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공고시 그 제한 사항과 제한 기준을 명시하여야 함</p> |
| 지명경쟁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제조 위탁,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용역 위탁인 경우 •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환경 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p>※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p> |

■ 제6조(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회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 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 마당을 운영한다.

■ 제7조(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① 회사는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란 회사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시스템

②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업체들끼리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 제8조(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제3절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 제9조(계약체결 준수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면의 사전 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②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1.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 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3.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 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원가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 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5.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6. 단가 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명확한 납기

1. 회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 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 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거래 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 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객관적 검사기준

1.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 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 전 또는 검사 기간 중의 발주 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 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2.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6.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7.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8.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9.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⑥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 원인 규명 주체, 하자 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 해제·해지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가.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 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거래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 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1) 기술자료 예치 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 제도’ 이용

- (2) 수시 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 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 제10조(계약체결 지양 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 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 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구두 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 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회사(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 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7.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8.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9. 입찰 내역서, 낙찰자 결정 품의서, 견적서, 건설 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 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 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 특매, 옴가 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③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 의뢰 행위
-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④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거래 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 유지 및 납기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 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4.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5. 거래업체에게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6. 경품부판매, 할인 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 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⑤ 추가 공사비 미반영 행위(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1. 공사완료 후 추가 물량 발생시 회사에게 추가 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 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 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3.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⑥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1.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2.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3.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4.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 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⑦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1.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⑧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거래 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 개발을 거래 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 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⑨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회사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 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⑩ 부당 특약 행위

1.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2.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3.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4.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제4절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 제11조(계약이행 준수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①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②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 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 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 제12조(계약이행 지양 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①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 내용과 상이한 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 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 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②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 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공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③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6.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탁 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거래 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행위

1. 거래 개시 또는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3. 기타 거래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⑤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

: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⑥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⑦ 보복 조치 행위

: 거래 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⑧ 탈법 행위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 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 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⑨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 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 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 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⑩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 거래 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거래 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⑪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다.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제3장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3조(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 사항의 목적)

이 실천 사항은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14조(용어의 정의)

- ① “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의 제조·건설·용역 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②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③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회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제2절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 제15조(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 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 매체(회사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 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선정기준

- 가.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 면허 보유여부
- 나.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라.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2. 부당한 선정기준

- 가. 퇴직 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나.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다.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②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 제18조(공평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19조(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 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20조(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①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1.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 가.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다.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라.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 가.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 나.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다.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 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라.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회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 제22조(제재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4장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제1절 목적 및 기본원칙

■ 제23조(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천 사항의 목적)

이 실천 사항은 회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4조(기본원칙)

이 실천 사항은 회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 제25조(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 기구 등이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 제26조(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①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내부 심의위원회는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 ③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 준수여부
 2.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준수여부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여부
 5.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6.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위반여부
- ④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⑤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⑥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⑦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 ⑧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제1절 목적 및 구성

■ 제27조(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 실천 사항의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회사와 협력업체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 문화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제28조(실천 사항의 구성)

이 실천 사항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 제29조(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①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1. 회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② 서면 기재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금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2.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3.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③ 서면 발급 시점

1. 원칙적으로 회사는 협력업체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가. 제조 위탁 : 협력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나. 수리 위탁 : 협력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 행위를 시작하기 전
 - 다. 건설 위탁 : 협력업체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 라. 용역 위탁 : 협력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④ 서면 발급 방법

1.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웹)
 -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⑤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가. 단, 회사가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나.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가.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나.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 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다.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업체가 회사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라.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가.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 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⑥ 특칙

1. 하도급계약의 추정

가.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회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 양식

다.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 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마. 만약 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바. 상기 위탁 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회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2. 공동 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이행 방식의 공동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 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 제30조(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①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1.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 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협력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② 서면 기재사항

회사가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서면 발급 시점

회사가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서면 발급 방식

1.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회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표준 양식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웹)
 -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⑤ 예 외

1. 회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1조(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①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회사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 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 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 계약 상의 교부 조건이 발생하여 회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서면 기재 사항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 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 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 방법, 기타 회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2. 권리 귀속 관계 :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 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 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③ 서면 발급 시점

회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 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 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 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서면 발급 방법

1.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회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행위 심사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별지 4)을 사용한다.

※ 별지 4: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 양식

3. 회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웹)
 -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⑤ 예 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 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회사와 협력업체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 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32조(기타 서면의 발급)

① 목적물 등의 수령 증명서 발급

1. 회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협력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서 발급

1.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3. 다만, 회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가. 검사 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다. 회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 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4.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서면 발급 방법

1.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 제33조(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 ① 회사와 협력업체는 모두 상기 제2절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와 같다.

<보존 대상 서면>

| 일련번호 | 보존 대상 서면 | 비 고 | |
|------|--------------------------------------------------------------------------------------------------------|-----------------|----------------------------|
| 1 | 기본 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의무 발급서면 |
| 2 |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 5 | 목적물 등 수령 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등 기재서류 |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 금액 및 지급 수단(어음 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
| 10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 11 |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 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
| 14 | 입찰 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 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 ②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 ③ 회사와 협력업체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1. 제조 위탁·수리 위탁 및 용역 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 : 협력업체가 회사에게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2. 용역 위탁 중 역무의 공급 위탁 :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3. 건설 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4. 하도급계약이 종료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별지1]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

| | | | | | | | | | |
|---------------------------|--------|------------------|----|----------------------|----|----|--|------|----|
| 1. 회사와 협력업체 | | | | | | | | | |
| 회사 (수신인) | 사업자명* |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 | | | |
| | 주소* | | | | | | | | |
| 협력업체 (발신인) | 사업자명* |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 | | | |
| | 주소* | | | | | | | | |
| | 담당자 | 성명 | | | 소속 | | | 전화번호 | |
| 2. 위탁 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 | | | | | | |
| 위탁 일시* | .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성명 | | | 소속 | | | 직위 |
| 3. 위탁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 | | | | | | |
| 1) 목적물* | |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등 | | | | | | | |
| 2) 하도급 대금* | |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 | | | | | | |
| 3) 목적물의 인도 | | 시기 및 장소 등 | | | | | | | |

별표(*)는 시행령 규정 사항임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 | |
|-----------------------------------------------------------------------------------------------------------------------------------------------------------------------------------------------------------------------------------------------|---------------------------------------------------------------|
| 4)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시기 등 |
| | |
| 5)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재료 상승 등에 따른 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 | |
| 6)그 밖의 사항 | 회사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등 |
| | |
| <p>위의 위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 성립이 추정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명_____대표자_____ (인)</p> | |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별지 2]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 | | | | | | |
|-------------------------------------------------------------------------------------------------------------------------------------------------|--------|------------------------------------|--|----------------------|--|------|
| 1. 회사와 협력업체 | | | | | | |
| 협력업체 (수신인) | 사업자명 |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
| 회사 (발신인) | 사업자명 |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
| | 담당자 | 성명 | | 소속 | | 전화번호 |
| 2. 협력업체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 | | | | |
| 위탁 일시 | | . | | | | |
| 위탁 내용 |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조정 등 | | | | |
| 3.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 | | | | | |
| <p>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명_____대표자_____ (인)</p> | | | | | | |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별지 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 | | | | | | | |
|---------------------------------|--------|-------------------------------------|--|----|-------------------|------|--|
| 1. 회사와 협력업체 | | | | | | | |
| 회사 | 사업자명 | |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 |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 |
| | 담당자 | 성명 | | 소속 | | 전화번호 | |
| 협력업체 | 사업자명 | |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 |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 |
| | 담당자 | 성명 | | 소속 | | 전화번호 | |
| 2. 감액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 | | | | |
| 1) 감액 사유 | |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 | | | | |
| 2) 감액 기준 | | 대금 감액 액수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 | | | | | |
| 3)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 위탁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 | | | | |
| 4) 감액 금액 | | 감액 기준과 감액 대상 물량 등을 기초로 산정한 최종 감액 금액 | | | | | |
| 5) 공제 등 감액 방법 | |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 | | | | |
| 6) 그 밖의 사항 | | 기타 회사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 | | | |
| 위의 서면 기재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사업자명 _____ 대표자 _____ (인) | | | | | | | |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별지 4]

기술자료 요구서

| | | | | | | | |
|-----------------------------------|--------|---------------------------------------------------------------------------|--|-------------------|--|------|--|
| 1. 회사와 협력업체 | | | | | | | |
| 회사 | 사업자명 |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 | | |
| | 담당자 | 성명 | | 소속 | | 전화번호 | |
| 협력업체 | 사업자명 |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 | | |
| | 담당자 | 성명 | | 소속 | | 전화번호 | |
| 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 | | | | |
| 1) 기술자료 내역 | | 요구하는 기술정보·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특허 등본 원부 등 기술 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 | | | |
| 2) 요구 목적 | | 회사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 | | | | |
|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 (i)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ii)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 | | | | |

[부록 ⑤]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 | |
|-----------------------------------------------------------------------------------------------------------------------------------------------------------------------------------------------------------------------------------------------|--------------------------------------------------------------------------------------------------------------------------------------|
| 4) 권리 귀속 관계 | (i)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 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ii)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iii)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iv) 기술 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
| 5) 대 가 |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
| 6) 인도일 및 인도 방법 | 당해 기술 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 방법 등을 기재 |
| 7) 그 밖의 사항 | 기술자료 임치계약체결 여부, 기술자료 요구 시 회사와 협력업체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
| <p>회사 ○○○ 와 협력업체 ○○○ 는 회사의 기술자료 요구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회 사 명 _____ 대표자 _____ (인)</p> <p>협 력 업 체 명 _____ 대표자 _____ (인)</p> | |

[부록 ⑥] 부패방지정책

■ 제1조 목적

- ①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패방지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의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 방지법(UK Bribery Act 2010)」, 「OECD 부패방지협약」 등 해외의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 정의

- ① “부패리스크”란 부패행위 및 부패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소를 말한다.
- ②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 ③ “비즈니스 관계자”란 회사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수립할 계획이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 ④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란 회사가 법령이나 사회 상규 등에 반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 ⑤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에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3조 적용 범위

- ① 본 정책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고용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또한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거래과정에서도 정책을 준수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본 정책은 모든 사업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적용된다.

[부록 ⑥] 부패방지정책

■ 제4조 관리 및 점검

- ① 회사는 내부통제, 준법 프로그램이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되고 지속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 ② 회사는 부패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패 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제5조 금품 등의 제공

- ①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제안·요구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금품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 내 정해진 승인 및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하며, 특정 금품 등의 제공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준법지원팀에 문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그러한 행위가 본 정책 및 부패방지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한다. 거절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메시지나 오해나 재고의 여지가 없도록 하며, 즉시 준법지원팀에 그러한 제공 또는 요청이 있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 기부 및 협찬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이름으로 혹은 회사를 대신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부 또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부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나 정치적 기부 은폐를 목적으로 기부나 협찬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기부 및 협찬 진행 절차에 관해서는 「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 제4조를 준용한다.

■ 제7조 비즈니스 관계자

-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사업체와의 거래를 피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비즈니스 관계자가 회사와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은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 명시 등을 통해 부패방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비즈니스관계자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면 즉시 준법지원팀에 통보해야 하고 준법지원팀은 부패리스크를 검토하여 적법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록 ⑥] 부패방지정책

■ 제8조 장부와 기록

회사는 모든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한 회계장부와 기록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 교육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방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부패방지에 대한 실행 의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한다. 부패방지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발견된 부패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법령, 사규 및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은 해당 교육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지원팀에 문의하여야 한다.

■ 제10조 신고 및 보복 금지

-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임직원으로부터 신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 ②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신고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내부신고제도(V-GMP, 우편, 홈페이지 제보 코너 등)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재조치

임직원이 본 정책 · 사내 규정 또는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록 ⑦]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사람이 중심인 한국콜마는 인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삶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 인간경영, 기술경영, 가치 경영 및 책임경영이라는 기업이념을 실현하고 규범준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 하나,**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과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둘,**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어떠한 부패행위 및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셋,** 회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 넷,** 규범준수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지배기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갖는다.
- 다섯,**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 여섯,**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 행위나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미준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일곱,**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록 ⑧]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 제1조 목적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임직원이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청, 언론 등과 접촉 및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콜마 주식회사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원칙을 준수하면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정의

- ① 본 가이드라인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 함은 법규, 행정 방침 등을 포함하여 명문화된 모든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공적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람 또는 조직이나 집단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이 공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법지원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③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기부, 후원, 이권 부여 등 그 밖에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④ “부정한 청탁”이란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법령에 위반되거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부록 ⑧]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 ⑤ “청탁 금지법”이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 ⑥ “부패방지”란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등 부패방지 관련 법규의 준수를 철저히 하고, 공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고용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 부패방지 관련 법규 준수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패방지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상기 법규를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 제5조 부정한 청탁의 금지

- ① 회사의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그에 수반하여 금품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지된다.
- ② 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한 부정 청탁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청탁의 상대방인 공직자 등 또는 공무수행사인과의 관계에서 공공성에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 이는 금지된다.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준법지원팀에 문의하여야 한다.
- ③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그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내용을 준법지원팀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록 ⑧]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 제6조 금품 등의 제공

① 공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다. 만일 하기 요건들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준법지원팀과 상의하여야 한다.

가. 금품 등이 공적 이해관계자의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닐 것

나. 금품 등의 제공이 회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

다. 금품 등의 가액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제공 동기와 목적, 제공 시기에 비추어 과도하지 아닐 것

② 공직자 등에게 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품 등의 종류별로 준수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한 조화는 10만원.

3. 선물(금전, 유가증권,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 5만원.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으로 하되,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20만원으로 한다.

4. 식사 및 향응,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각 경우에 적용되는 상한액을 한도로 한다. 단,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및 회사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하게 임직원과 공직자 등 사이에 오랜 기간 쌓아온 사적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임직원 개인의 비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액의 한도 없이 허용되며,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준법지원팀과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

5.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직자 1인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기준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 등에게 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 또는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는 회계관리 방침에 따라 보존한다. 준법지원팀은 공직자 등에 대한 비용 집행의 통보 사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록 ⑧]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 ④ 공직자 등에게 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상대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승인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첨부1의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 제공 관련 Self-Check List’를 첨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의 집행에 대한 결과를 사내 전결 규정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결재 승인을 통해 보고하고 이를 준법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사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임직원은 첨부2의 ‘공식적인 행사 관련 Self-Check List’를 작성하여 사내 전결 규정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사전에 결재 승인을 통해 보고하고 이를 준법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본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준법지원팀은 각 ‘Self-Check List’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승인 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 제7조 강의 등 사례금 제공 제한

회사는 공직자 등에게 그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강연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1시간 또는 1건 당 가이드라인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40만 원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이드라인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직자 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더라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개인적인 금품 등 제공

회사는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적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임직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록 ⑧]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부칙(2021. 9. 6.)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13.)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 1.)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⑧]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 첨부 1.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 제공 관련 Self-Check List

- 당월 결과보고서 상 세부 내역 중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를 상대로 집행된 건에 대해 허용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Self-Check 합니다.
- Self-Check 결과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가 1건 이상 발생시 준법지원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Self-Check Point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 Self-Check 기준

| 구분 | | 기준 | | |
|-----------------------------------|--------|------------------------------------------------------------------------|-------------------------------------------|--------------------------|
| 1 | 직무관련성 |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의 관련성 | | |
| 2 | 공직자 등 | 공무원, 각급 학교의 장·교직원, 언론사의 임직원 및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 | | |
| 3 | 허용범위 등 | 구분 | 내용 | 기준(1인당) |
| | | 음식물 | 원만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원 이하 |
| | | 선물 | 금전, 유가증권 등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 5만원 이하 (농수산물 10만원 이하) |
| | | 경조사비 | 공직자 등 본인, 직계 존·비속의 혼인 또는 장례 | 5만원 이하 (화환조화 10만원 이하) |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20만원 | | | | |

■ Self-Check 결과

| | |
|---------------------|--------------------------|
| Self-Check 결과 이상 없음 | <input type="checkbox"/> |
|---------------------|--------------------------|

[부록 ⑧]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 첨부 2. 공식적인 행사 관련 Self-Check List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음료,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Self-Check List를 작성하여 기안 작성 시 첨부합니다.
- Self-Check List 관련 개별 판단 곤란 또는 「X」 항목 발생 시 준법지원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점검 (O/X) | 기준 | | | | | | |
|------|---------------------------|----------------------------------------------------------------------------------------------------------------------------------------------------------------------------------------------------------------------------------------------------------------------------------------------------------------------------------------------------------------------------------------------------------------------------------------------------------------------------------------------------------------------------------------------------------------------------------------------------------------------------------------------------------------------------------------------------------------------------------------------------------------------------------------------------------------------------------------------------------------------------------------------------------------------------------------------------------------------------------------------------------------------------------------------------------------------------------------------------------------------------------------------------------------------------------|------|----|---|----------|---|----------------------|
| 1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의 목적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기관 업무 및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과의 연관성이 있는가? - 초청 기관의 공문, 공식 초청장 등이 존재하는가? ○ 참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의 불특정 및 차별 없는 개방 되어 있는가? - 단, 참석자 특정 시 합리적인 사유 必 ○ 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 되어 있는가? - 단, 비공개 행사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 必 ○ 내부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가 존재하는가? <div style="margin-left: 20px;">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head> <tr> <th>점검결과</th> <th>진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O</td> <td style="text-align: center;">2번 문항 점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내(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td> </tr> </tbody> </table> </div> | 점검결과 | 진행 | O | 2번 문항 점검 | X | 사내(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 |
| 점검결과 | 진행 | | | | | | | |
| O | 2번 문항 점검 | | | | | | | |
| X | 사내(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 | | | | | | | |
| 2 | 금품 등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전원에게 금품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개인 또는 집단 한정하여 제공되지 않는가? - 단, 수행 역할 등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등 제공 가능 <div style="margin-left: 20px;">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head> <tr> <th>점검결과</th> <th>진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O</td> <td style="text-align: center;">3번 문항 점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업무 진행 불가</td> </tr> </tbody> </table> </div> | 점검결과 | 진행 | O | 3번 문항 점검 | X | 해당 업무 진행 불가 |
| 점검결과 | 진행 | | | | | | | |
| O | 3번 문항 점검 | | | | | | | |
| X | 해당 업무 진행 불가 | | | | | | | |

[부록 ⑧]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 첨부 2. 공식적인 행사 관련 Self-Check List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음료,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Self-Check List를 작성하여 기안 작성 시 첨부합니다.
- Self-Check List 관련 개별 판단 곤란 또는 「X」 항목 발생 시 준법지원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구분 | | 점검 (O/X) | 기준 | | | | | | |
|------|-------------------------------------|-------------|-------------------------------------------------------------------------------------------------------------------------------------------------------------------------------------------------------------------------------------------------------------------------------------------------------------------------------------------------------------------------------------------------|------|----|---|-------------|---|-------------|
| 3 | 제공되는 금품 등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가? | | <p>○비용의 적정성 -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할 것으로 인정되는가?</p> <p>⇒</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점검결과</th> <th>진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O</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업무 진행 가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업무 진행 불가</td> </tr> </tbody> </table> | 점검결과 | 진행 | O | 해당 업무 진행 가능 | X | 해당 업무 진행 불가 |
| 점검결과 | 진행 | | | | | | | | |
| O | 해당 업무 진행 가능 | | | | | | | | |
| X | 해당 업무 진행 불가 | | | | | | | | |

[부록 ⑨] 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

■ 제1조 목적

이 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는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기부 및 협찬의 투명성과 합리성 증진을 위하여 회사의 기부 및 협찬 집행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① 기부 및 협찬의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공직자 등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② “공직자 등”이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말한다.
- ③ “기부”란 회사가 자선적, 공익적 목적에 기초하여 회사 이외의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회사의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물품,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④ “협찬”이란 후원, 지원 등 명칭에 관계 없이, 회사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 제3조 일반원칙

- ①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른 자선적, 공익적 목적에서만 기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선적, 공익적 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일회성 또는 단순 친목 행사로 지원효과가 낮은 사업
 2. 개인 및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영리성 사업
 3.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
- ③ 회사는 경영상 판단과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제4조에 정한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확인 후 기부·협찬을 검토한다.

[부록 ⑨] 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

■ 제4조 기부 및 협찬 집행 절차

- ① 공직자등으로부터 기부 또는 협찬을 요청 받은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내 전결 규정에 따른 승인권자의 결재를 받고 이를 준법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직자 등으로부터 기부 또는 협찬을 요청 받은 공문
 2. 담당자가 작성한 ‘기부 및 협찬 Self-Check List’
- ②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집행된 경우 주관부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집행에 대한 결과를 사내 전결 규정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결재 승인을 통해 이를 보고하고 준법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부·협찬 집행 담당 직원은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기부·협찬 집행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 ④ 준법지원팀은 제1항의 통보 사항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부금 또는 협찬금의 집행을 중지·보류할 수 있다.

■ 제5조 문서 보관

기부·협찬금 주관부서는 기안문, 계약서,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한 제반 문서 자료를 기부금 집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2021. 9. 6.)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 1.)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⑨] 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

※ 첨부. 기부 및 협찬 Self-Check List

- 공직자 등으로부터 기부 또는 협찬을 요청 받아 이를 진행하는 기안을 작성하는 경우 본 Self-Check List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 곤란 또는 문의사항 발생 시 준법지원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구분 | | 점검 사항 | 점검 (O/X) | 참고 |
|----|--------------|-------------------------------------------------------------------------------------------|----------|------------------------------------------------------------------------------------------------------------|
| 기부 | 실체적 요건 | 해당 사회공헌사업의 추진목적, 요청받은 경위, 상대방의 집행계획 등에 비추어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는가? | | 해당 항목의 점검 결과가 「X」 인 경우 준법지원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 | |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청탁 금지법 및 뇌물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 |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로 판단합니다. 해당 항목의 점검 결과가 「O」 인 경우 준법지원팀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 | 절차적 요건 | 상대방과 기부 또는 협찬에 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공식 공문을 수신하였는가? | | 해당 항목의 점검 결과가 「X」 인 경우 준법지원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 협찬 | 반대급부의 적정성 | 협찬의 경우,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반대급부)가 존재하고 객관적 가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 협찬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점검하며, 점검 결과가 「X」 인 경우 준법지원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부록⑩] 광고 업무 가이드라인

■ 제1조 목적

본 광고 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시행하는 광고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광고”란 회사가 홍보 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 고지 행위를 말한다.
- ② “홍보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의미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8. 위 1호에서 7호까지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
- ③ “언론사 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 광고비 산정 원칙

임직원은 홍보 매체에 대한 광고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상응하는 광고비를 책정할 수 있다.

1. 인쇄매체의 발행부수, 유가부수, 예비 공사 자료 등(사단법인 한국에이비시협회의 부수 공사 조사)
2. 방송매체의 시청률, 청취율 등
3. 인터넷매체의 방문자 수, 이용횟수 등
4. 옥외 매체 자료 등 기타 파악 가능한 자료

[부록 ⑩] 광고 업무 가이드라인

■ 제4조 광고 대상 홍보매체 선정 원칙

임직원은 홍보매체를 선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를 의뢰하려는 홍보 매체의 성격이 회사의 업무 및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 광고가 해당 홍보매체를 운영하는 언론사 등의 정식 내부 지침을 거쳐 집행되는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광고를 의뢰하려는 해당 홍보매체를 운영하는 언론사 등이 사실상 1인 또는 가족, 친족에 의하여 경영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언론사 등의 직원으로부터 악의적인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광고를 요구 받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 매체에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급하는 광고비가 사실상 언론사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에게 지급될 것이 명백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 매체에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광고의 정산

회사가 광고를 집행한 경우 주관부서 담당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첨부’의 ‘1. 정산서 양식’을 포함하여 “월간 광고비 집행 정산서”를 작성하고, ‘첨부’의 ‘2. 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 승인을 통해 이를 보고하고 준법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2021. 9. 6.)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 1.)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⑩] 광고 업무 가이드라인

※ 첨부. 월간 광고비 정산서 양식

1. 정산서 양식

| 순번 | 매체명 | 비용(만원) | 광고 내용 |
|----|------|--------|--------------------|
| 1 | 00일보 | 500 | (지면 및 온라인 광고 스캔 등) |
| 2 | | | |
| 3 | | | |

2. 전결 규정

| 기안 | 결재 | 통보 |
|-----|----------|-------|
| 담당자 | 집행 부서 임원 | 준법지원팀 |